

제2026-67호 2026년 8월 20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도시 기본이 튼튼한 행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세계가 찾는 매력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 | | |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48호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고시(여수시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49호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고시(여수시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0호 | 지방하천 점용(변경)허가 고시(상암천, 중흥천, 남수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1호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고시(여수 소재지구 A3블록 공동주택)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2호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고시(여수 소재지구 A4블록 공동주택) |

공 고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10호 | 여수국가산단 중흥·삼동지구 분양 공고(수의계약)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56호 | 2027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모집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60호 |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여수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61호 |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여수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62호 | 소하천 점용 (변경)허가 공고(중방천, 덕개천, 연화지천)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64호 |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3차)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65호 | 「돌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3차)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66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72호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73호 | 일반재산 [제3송학호] 선박 장비 등 일괄 매각 입찰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75호 | 도로지정공고 신덕동 455-1번지 외 2필지(453-2, 454-1)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80호 | 2026년 하반기 하멜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81호 | 2026년 하반기 평화테마촌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89호 |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

읍·면·동

- | | | |
|--------------|-----------|---|
| ○ 여수시 화양면 공고 | 제2026-35호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주삼동 공고 | 제2026-20호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중부민원출장소

- | | | |
|------------------|-----------|----------------|
|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 제2026-29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고시

여수시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8.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3. 사업위치 : 여수시 안산동 737번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32,466.1000㎡
 - 나. 건축면적 : 5,469.7514㎡
 - 다. 연 면 적 : 121,072.3939㎡
 - 라. 규 모 :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개동
5. 사업기간 : 2020. 12. 24. ~ 2027. 10. 31.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과(☎659-4095)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고시

여수시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8.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3. 사업위치 : 여수시 안산동 738번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20,456.3000㎡
 - 나. 건축면적 : 3,803.4545㎡
 - 다. 연 면 적 : 65,443.3751㎡
 - 라. 규 모 : 지하 4층/지상 21층, 공동주택 5개동
5. 사업기간 : 2020. 12. 24. ~ 2027. 10. 31.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과(☎659-409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6-250호

지방하천 점용(변경)허가 고시(상암천, 중흥천, 남수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제2026-12호	상암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낙포동 1263-14번지	7.5	국가오염 측정망 설치	2026.8.10. ~ 영구	신규
제2013-12호	중흥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63	에어리워드 코리아(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중흥동 904-4번지	66	원료 이송용 배관(5개소), 파이프랙	2013.07.01. 2028.05.31.	권리의무 승계
			에어리워드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주)					
제2013-24호	중흥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63	에어리워드 코리아(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중흥동 1638-63번지	4	원료 이송용 배관	2013.07.01. 2028.06.30.	권리의무 승계
			에어리워드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주)					
제2013-25호	남수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63	에어리워드 코리아(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치동 22-2, 1371번지, 월하동 163번지	376	원료 이송용 배관(4개소)	2013.07.01. 2028.06.30.	권리의무 승계
			에어리워드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고시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3BL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8.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3차) 사항

1. 사 업 명: 여수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여수소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박병엽 외 1개사
3. 사업위치 :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3BL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52,617.00㎡
 - 나. 건축면적 : 9,798.68㎡
 - 다. 연 면 적 : 208,864.68㎡
 - 라. 규 모 :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개동, 1,095세대
5. 사업기간 : 2026. 3. 30. ~ 2029. 5. 29.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서류는 여수시청 허가과(☎659-41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지구 A4BL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8.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2차) 사항

1. 사 업 명 :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여수소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박병엽, 이탁기
중흥토건(주) 대표 이경호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 소제지구 A4블록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26,585.00㎡
 - 나. 건축면적 : 5,120.85㎡
 - 다. 연 면 적 : 103,603.88㎡
 - 라.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584세대
5. 사업기간 : 2026. 3. 30. ~ 2029. 3. 29.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서류는 여수시청 허가과(☎659-41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가산단 중흥·삼동지구 분양 공고(수의계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26. 8. 19.

여 수 시 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분양대상 토지

구분	분양대상		감정가격(원)*	공급방법
	필지수	면적		
중흥지구	23	9,712.8	4,955,740,240	수의계약
삼동지구	2	2,187.3	1,518,117,010	
계	25	11,900.1	6,473,857,250	

※ 분양(수의계약) 대상은 기존 공고한 중흥2지구, 삼동2공구이며 분양 대상 토지의 세부 내역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감정가격은 기존 감정평가 금액으로, 감정평가 유효기간(2026. 7. 27.까지 유효)이 지나 수의계약 시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새로 산정된 감정가격을 적용합니다.

2. 분양대상 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만족하는 자(공동 신청의 경우도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45호, 변경승인내용 포함)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영위하려는 자

- 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6-42호, 변경승인 내용 포함)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용도, 업종 및 건축물의 범위, 자격 등 적합해야 함)
- 라. 최초 입찰경쟁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입주가능 주요업종(예시)

가. 생산지원시설용지

- 운수시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 창고시설(창고, 하역장, 집배송 시설)
- 업무시설(각종협회, 업무지원센터, 사무소 등)
-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나. 후생지원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의 의료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 근린생활시설의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 근린생활시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적합한 시설만 입주 가능**하며, 기타 상세 사항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분양 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분양공고	‘26. 8. 19.(수) ~ 9. 4.(금) (17일간)	여수시 누리집	www.yeosu.go.kr
		신문공고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actoryon.go.kr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신청접수	‘26. 8. 24.(월)부터 (10:00 ~ 17:00, 단, 금요일은 11:00까지)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접수
입주심사	‘26. 8. 26.(수)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별통보
입주심사결과통보	‘26. 8. 31.(월)부터		
분양계약체결	‘26. 9. 3.(목)부터 (10:00 ~ 17:00)	여수시 공영개발과	방문계약
입주계약체결	‘26. 9. 3.(목)부터 (10:00 ~ 17:00, 단, 금요일은 11:00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계약

※ 분양계약금(매매대금의 10%)를 납부한 후 여수시(공영개발과)에서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광주광역본부 전남지부에서 입주 계약 체결

6. 계약 방법

- 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광주광역본부 전남지부에서 입주 심사를 거친 실수요자에 한하여 여수시와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 분양 신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동일 필지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추첨을 통해 분양 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다. 여수시와 분양 계약 체결 이후, 별첨 6의 입주 계약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7. 분양 계약 체결 및 해제

- 가. 입주심사 통과자와 계약 체결자 명의를 **동일**해야 합니다. 반드시 **입주심사를 통과한 명의로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나. 분양 계약 구비서류(별첨 4 참고)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 계약금(매수 대금의 10%) 입금 확인증 - 매수신청서 1부[별첨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 4] - 종람확인서 1부[별첨 4]
개 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법 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대리 시 추가서류	- 위임장(위임범위 명확 기재, 본인 인감날인) 1부[별첨 4] -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다. 분양계약서 상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매매대금이 반환됩니다.

7. 분양대금 납부 방법

가. 계 약 금 : 계약체결일에 매수금액의 10% 납부

나. 중도금 1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수금액의 30% 납부

다. 중도금 2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금액의 30% 납부

라.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매수금액의 30% 납부

마. 계약금 및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부)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로 납부 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 또는 지정 계좌 이외의 납부는 무효처리됩니다.

바.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되면 연체일수에 따라 지정금융 기관(광주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이율에 해당하는 년(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주심사 구비서류(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광주광역시본부 전남지부) : 별첨 5

9. 토지사용승낙, 소유권 이전

가. 분양대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건축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 완납, 조성사업 준공,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등을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신청인은 분양공고문,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등을 분양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나. 대상 토지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현황 상태로 매각하며, 신청자는 현 상태에 대하여 사전 답사를 통하여 현 조성상태,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현황, 지상노출 시설물, 입지여건, 진·출입로 등 제반 현황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분양계약 전 신청인은 충분히 제반 현황을 직접 확인한 후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다.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

- 재해 ·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건축법, 주차장법, 관련조례 등), 지구단위계획 등은 분양(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 확인하여야 하고, 토지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규제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이 제 · 개정되는 경우 제 · 개정된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 라. 신청인은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 연약지반 처리현황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연약지반 처리 비용, 노출 및 지하암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여수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마.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물 설치기관에 직접 인입 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바. 신청자는 신청 접수 전 개별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 공고, 개발 · 실시계획, 관련 부서 문의 등을 검토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 등으로 실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 매수자는 매각 재산의 이용에 따른 제반 인 · 허가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여수시는 재산 매각 후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 제한 및 민원 발생 사항,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아. 상·하수도 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 하여야 하고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자. 오·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및 「경산 및 청주 · 진주 · 익산 · 여수 ·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25-374호, 2025.6.5.)에 따라 유입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승인 잔여량을 사전 확인하여 배수설비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여수공공폐수처리시설 ☎061-685-8183~4)

- 차.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다량의 공해·악취물질 배출업종, 도로·용수 등 기반 시설에 애로가 있는 업종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됩니다.
- 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 책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 분양토지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파. 취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금 관련 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관계 법령 및 과세 기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 분양토지에 당초 지하시설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 경우, 철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거. 해당지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에따른 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너. 소유권 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더.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삼동지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생골재를 일부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러.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업 단지계획변경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머. 해당지구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용지로 조성하였으므로 산업시설 및 공장시설의 입주는 명확히 제한됩니다.
- 버.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지구 내 비소, 벤젠, 카드뮴, 포름알데히드가 발암위해도 기준(10^{-6})을 초과하고 있음을 사전 공지합니다.

서. **※ 선하지 관련 안내** : 중흥지구의 경우 사업 부지 내를 통과하는 송전선로의 전자파 및 자기장의 영향이 있으며, 삼동지구는 인근에 송전선로가 있으므로 전자파 및 자기장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선하지는 한전의 개발제한, 권원 확보, 지상권 (재)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분양 접수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매수희망자)에게 있습니다.**(한전 광주전남본부 지역협력부 ☎062-260-5723, 5728)

11. 문의사항

- 가. 토지 분양 담당 : 여수시 공영개발과 공영지원팀(☎061-659-4572)
- 나. 건축 인·허가 담당 : 여수시 산업지원과 원스톱지원팀(☎061-659-3795~6)
- 다. 입주심사·계약 담당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광주광역본부 전남지부
(여수시 삼동3길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070-8895-7989)
- 라. 송전선로 및 선하지에 관한 사항 : 한전 광주전남본부 지역협력부(☎062-260-5723, 5728)

붙임 위치도 및 분양필지 세부내역 1부.

[별첨 1] 분양계약서 1부.

[별첨 2]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실시계획 1부.

[별첨 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1부.

[별첨 4] (분양계약) 계약체결 구비서류 1부.

[별첨 5] (입주심사) 입주심사 구비서류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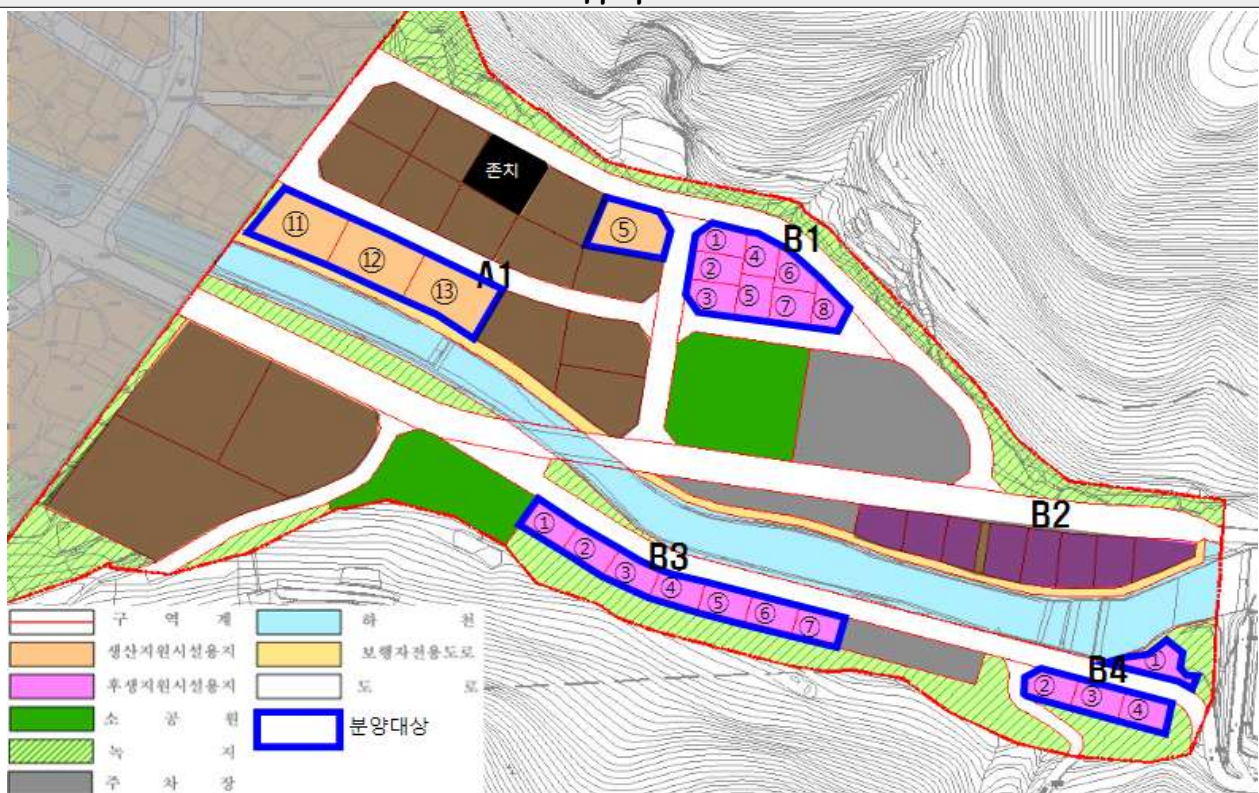
[별첨 6] (입주계약)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류 1부. 끝.

붙임1 위치도 및 분양필지 세부내역

□ 중흥 2지구 위치도



위치도



분양계획도

□ 중흥 2지구 분양 필지 세부내역

용도	연번	블록지번		토지소재지	예정지번	면적(㎡)	단가(원/㎡)	분양예정가 (감정평가액)
합계				23필지		9,712.8		4,955,740,240
생산지원 시설용지	1	A1	5	여수시 중흥동	1804-4	778.1	445,718	346,812,890
	2	A1	11	여수시 중흥동	1805-1	923.5	436,703	403,295,320
	3	A1	12	여수시 중흥동	1805-2	935.3	436,703	408,448,420
	4	A1	13	여수시 중흥동	1805-3	968.9	436,703	423,121,640
후생지원 시설용지	5	B1	1	여수시 중흥동	1806-1	305.3	563,908	172,161,090
	6	B1	2	여수시 중흥동	1806-8	321.6	563,908	181,352,780
	7	B1	3	여수시 중흥동	1806-7	312.4	580,935	181,484,200
	8	B1	4	여수시 중흥동	1806-2	304.8	541,872	165,162,710
	9	B1	5	여수시 중흥동	1806-6	311.4	558,399	173,885,460
	10	B1	6	여수시 중흥동	1806-3	295.8	541,872	160,285,870
	11	B1	7	여수시 중흥동	1806-5	310.8	558,399	173,550,420
	12	B1	8	여수시 중흥동	1806-4	274.1	569,417	156,077,140
	13	B3	1	여수시 중흥동	1820-1	342.1	569,417	194,797,490
	14	B3	2	여수시 중흥동	1820-2	331.2	563,908	186,766,300
	15	B3	3	여수시 중흥동	1820-3	332.3	558,399	185,556,010
	16	B3	4	여수시 중흥동	1820-4	331.6	558,399	185,165,120
	17	B3	5	여수시 중흥동	1820-5	331.0	552,890	183,006,650
	18	B3	6	여수시 중흥동	1820-6	331.0	552,890	183,006,650
	19	B3	7	여수시 중흥동	1820-7	316.5	552,890	174,989,730
	20	B4	1	여수시 중흥동	1822	377.2	509,821	192,304,420
	21	B4	2	여수시 중흥동	1821-1	333.8	536,364	179,038,160
	22	B4	3	여수시 중흥동	1821-2	322.2	536,364	172,816,340
	23	B4	4	여수시 중흥동	1821-3	321.9	536,364	172,655,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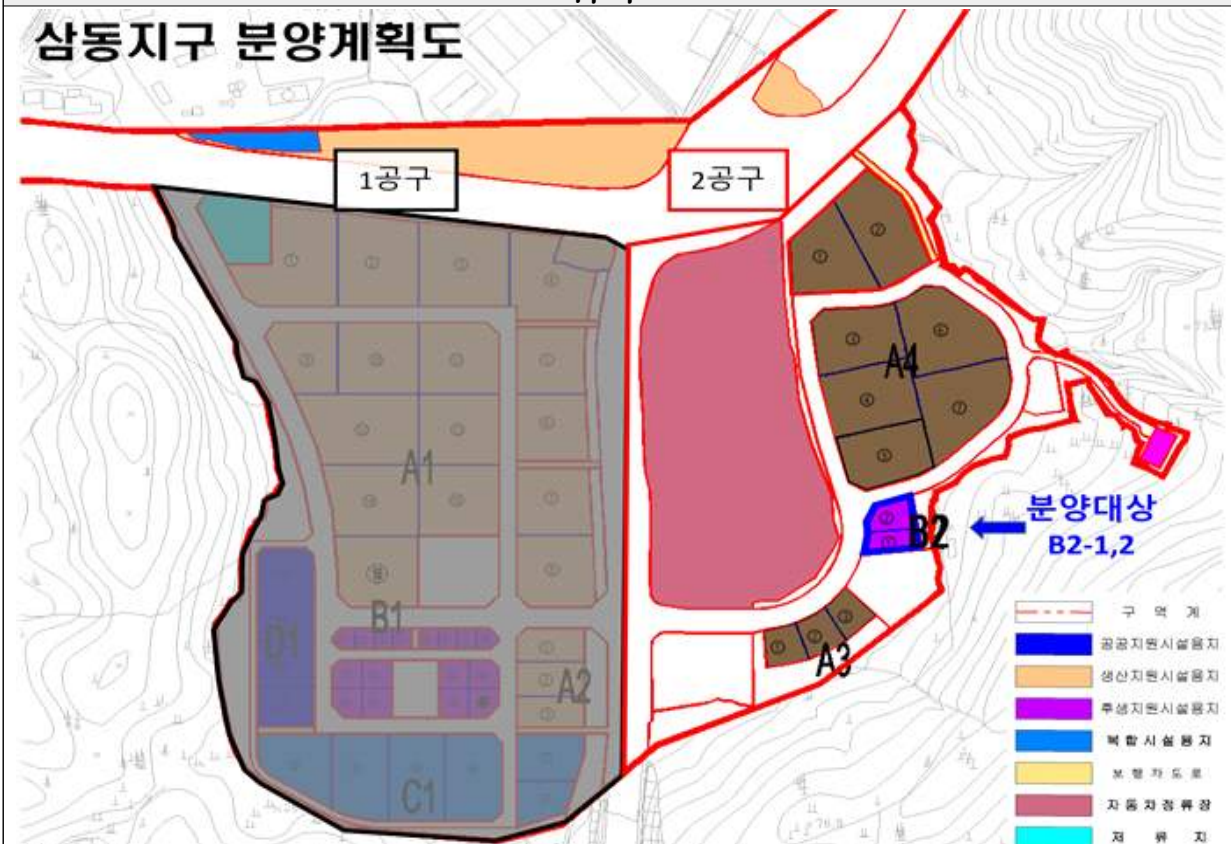
※ 위 필지 중 **A1-5, A1-12는 선하지에** 해당되며, 금회 분양필지에 **미 포함된 필지는 추후 분양** 검토 예정이며, **감정평가 유효기간(2026. 7. 27.까지 유효)**이 지나 수의계약 시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새로 산정된 감정가격을 적용합니다.**

□ 삼동 2공구 위치도



위치도

삼동지구 분양계획도



분양계획도

□ 삼동 2공구 분양 필지 세부내역

용도	연번	블록지번		토지소재지	확정지번	면적(㎡)	단가(원/㎡)	분양예정가 (감정평가액)
합계				2필지		2,187.3		1,518,117,010
후생지원 시설용지	1	B2	1	여수시 주삼동	1062	1,000.5	691,070.9	691,416,480
	2	B2	2	여수시 주삼동	1061	1,186.8	696,579.5	826,700,530

※ 위 필지의 감정평가 유효기간(2026. 7. 27.까지 유효)이 지나 수의계약 시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새로 산정된 감정가격을 적용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분 양 계 약 서

※ 매수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8조에 의거 입주계약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의무 미 이행시 산업집적법 제52조(벌칙), 제54조(양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여수국가산업단지() 분양계약서

■ 입주기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용 지		건 축 면 적	m ²
연 면 적		부대시설면적	m ²

■ 분양받은 토지의 표시

소재지	번지	지정용도	지목	면적(m ²)	비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여수국가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여수시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입주업체인 _____(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 권리와 의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분양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조(매매대금 및 분양대금납부방법) ①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 금		원(금	원)
구 분	납부약정일	납 입 액	비 고
계약보증금	계 약 일		분양대금의 10%
1차 중도금	계약체결일 3개월이내		30%
2차 중도금	계약체결일 6개월이내		30%
잔 금	계약체결일 9개월이내		30%
합 계			100%
납부 방법	고지서 발급		

②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 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3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제2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정기일의 다음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기간에 지정금융기관(광주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이율에 해당하는 년(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공공시설이용 및 부담금) **을**은 계약체결 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및 관리비등 비용부담의 의무를 진다.

제5조(조세공과금의 부담) ① 제2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용 승인일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로 본다.

제6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체결 이후 할부이자율·연체이자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계약서상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변경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소유권 이전 전 건축 등 공사시행을 위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준공인가 전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갑의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미납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분양대금 50%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한 기관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갑은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도 목적용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갑은 을이 분양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의 원인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한다.

제9조(담보권의 행사)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을**이 미납 잔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7조 제3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게 제2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지급 잔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 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11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을**이 목적용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을**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갑**은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갑**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제12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목적용지를 **갑**의 동의 없이 불법양도하거나 임대한 때
4. **을**이 목적용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명의변경, 매매, 양여, 그밖의 권리 변동수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저당권 및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5. **을**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
7.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 계약체결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제11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보증금·위약금 귀속) 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

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 및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을**에게 지급 시는 실제 납부 일부터 환급일까지 지정금융기관(광주은행) 요구불 기본금리로 지급하되 관련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당초 분양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4항 규정(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적용을 받는다.

제14조(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 특약사항

1. “**을**”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 연약지반 처리현황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연약지반 처리비용, 노출 및 지하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을**”은 매각재산의 이용에 따른 제반 인·허가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갑**”은 재산매각 후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제한 및 민원발생 사항,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 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 년 월 일

“갑” 賣 渡 人 여 수 시 (3612)

대 표 자 : 여 수 시 장 서 영 학 인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을” 買 受 人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8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1)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생산 지원시설 (중흥·삼동)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바목, 사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나목, 라목, 바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단,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함) - 단,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해당 부지 내 부설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불허)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 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않음
	형 태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조경시설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주조색(70% 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 미만) : 제한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후생 지원시설 (중흥·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 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철타이 있는 골프연 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단,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함) - 단,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해당 부지 내 부설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불허)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 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않음
	형 태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시설 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조경시설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주조색(70% 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 미만) : 제한없음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시행 2026. 5. 21.]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2호, 2026. 5. 15., 일부개정]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044-203-4437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
-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 '67. 2. 20여천공업단지 기공식
- '74. 4. 1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
- '74. 7. 24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
- '79. 11. 7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
- '80. 1. 29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
- '81. 3. 11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
- '82. 10. 29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
- '91. 1. 28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 '91. 12. 12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 '92. 4. 1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3호)
- '93. 6. 18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 고시 제1993-32호)
- '94. 10. 31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제1994-136호)
- '96. 6. 4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
- '96. 11.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 '97. 5.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9호)
- '97. 7.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34호)
- '97. 10. 20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
- '98. 4. 2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28호)
- '99. 4. 16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15호)
- '99. 9.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
- '00. 4. 7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38호)
- '01. 10. 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24호)
- '01. 12. 28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
- '02. 10. 1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
- '03. 12. 26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3호)
- '04. 12. 4확장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8호)
- '04. 12.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 '04. 12. 23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237호)
- '05. 4. 1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 '07. 1.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 '08. 01. 3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5호)
- '08. 11. 25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
- '09.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호)
- '10. 9.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69호)
- '12.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호)

- '13. 7. 26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3-220호)
- '13. 11. 28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83호)
- '13. 12. 1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0호)
- '15. 12. 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
- '17. 1. 5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16-358호)
- '17. 1.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호)
- '17. 4. 25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56호)
- '17. 7. 1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7호)
- '18. 4. 3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 '18. 6. 21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
- '18. 10. 19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
- '19. 8. 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
- '19. 11. 7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
- '20. 2. 5. 중흥·삼동지구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고시 제2020-36호)
- '20. 5.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
- '21. 7.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7호)
- '21. 11.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7호)
- '21. 12. 2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8호)
- '22. 1. 6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22-2호)
- '22. 3.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0호)
- '22. 6.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8호)
- '22. 9. 14.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8호)
- '23. 4.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3호)
- '23. 11.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5호)
- '24. 10. 2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
- '25. 6. 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
- '26. 5. 1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32,483,189.2	24,923,576.8	16,826.1	383,939.4	400,765.5	25,324,342.3	1967년 ~ 2025년	여수시, 한국수자원 공사, 개별조성
산업시설	23,489,573.5	23,163,469.4	-	326,104.1	326,104.1	23,489,573.5		
지원시설	1,823,000.1	1,755,626.4	9,538.4	57,835.3	67,373.7	1,823,000.1		
공공시설	4,233,614.4	-	-	-	-	-		
녹지구역	2,925,232.5	-	-	-	-	-		
복합구역	11,768.7	4,481.0	7,287.7	-	7,287.7	11,768.70		

라. 입주현황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복합구역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복합구역	계
계		315	279	171	765	23,489,573.5	1,823,000.1	11,768.7	25,324,342.3
'25.11월기준		312	215	21	548	23,163,469.4	1,755,626.4	4,481.0	24,923,576.8
향후계획		3	64	150	217	326,104.1	67,373.7	7,287.7	400,765.5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확충계획	비고
교통 시설	도로	◦도 로 : 남해고속도로 순천분기 30km	-	산업 단지 입지 여건
	철도	◦철 도 : 전라선 덕양역 분기 13.2km, 여천역(KTX) : 6km		
	항만 (44선좌)	·낙포부두 : 5만톤급 2선좌, 3만톤급 1선좌, 2만톤급 1선좌, 3천톤급 1선좌 ·중흥부두 : 5천톤급 2선좌, 3천톤급 3선좌 ·제2중흥부두 : 5천톤급 2선좌 ·LPG부두 : 6만5천2백톤급 1선좌 ·석탄부두 : 1만5천톤급 1선좌 ·사포1부두 : 10만톤급 1선좌 ·사포2부두 : 10만톤급 1선좌 ·엘지화학제품부두 : 9천톤급 2선좌 ·엘지VCM부두 : 5천톤급 1선좌 ·지에스칼텍스정유 제1제품부두 : 5만톤급 1선좌, 3만5천톤급 1선 좌, 1만2천톤급 1선좌, 7천톤급 1선좌, 5천톤급 2선좌, 2천 톤급 1선좌, 7백5십톤급 1선좌 ·지에스칼텍스정유 원유부두 : 25만5천톤급 1선좌, 32만톤급 1선좌, 12만톤급 1선좌 ·E1가스부두 : 3천8백톤급 1선좌 ·코스모스부두 : 5천톤급 1선좌 ·삼남석유화학부두 : 6천톤급 1선좌 ·석유화학부두(확장단지) : 1만톤급 2선좌 ·지에스칼텍스정유 제2제품부두 : 1만톤급 1선좌, 1만5천톤급 2선좌, 1만7천1백톤급 1선좌 ·낙포석탄부두 : 7만톤급 1선좌, 1만톤급 1선좌, ·지에스칼텍스정유 제3제품부두 : 8만톤급 1선좌 ·여천일반부두 : 7만톤급 1선좌, 5천톤급 1선좌 ·여수화력 석탄부두 : 1만톤급 1선좌 ·제2석유화학부두 : 1만톤급 2선좌		
	공항	◦항 공 : 공단↔여수공항 20km 30분 소요	-	
유통 공급 시설	용수	◦주암, 수어댐 566천톤/일	-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전력	·발전소(1개소) : 68.5만kW ·변전소(6개소) : 154kV (5), 345kV(1)	-	
	통신	◦공급능력 8,800회선, 사용량 6,600회선	-	
환경 기초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장 : 135천톤/일	-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

나. 관리기본 방향

-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 (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 (3) 단지 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 (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 (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 가) 특화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정유, 금속소재·가공
- 나) 성장산업 : 석유화학, 비금속제품, 플랜트 OM&S, 금속소재·가공
- 다) 주력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 가) 석유화학 및 그 관련업종
- 나) 수출위주업체
- 다) 기술 도입승인 업체
- 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 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²,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32,483,189.2 (100.0)	23,489,573.5 (72.3)	1,823,000.1 (5.6)	4,233,614.4 (13.0)	2,925,232.5 (9.0)	11,768.7 (0.1)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m²)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합 계
601,209.0	381,706.0	9,450.0	16,709.0	156,489.7	1,165,563.7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단지별 입주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음.

단 지 명	입 주 대 상 업 종
석유화학 1,2단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및 관련 제조업
기 타 단 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및 레미콘, 아스콘 업종은 제외)

○ 다만, 입주제한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401, 50112, 50122, 52942업종

다) 석유·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한함.

* 환경·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5291)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 함)

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자) 증기 및 온수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

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

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다)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물(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

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 환경·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

마)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

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물류시설용도에 한 함)

사)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전력시설용도에 한 함)

아)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자)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특물과 공작물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타)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기존단지

1) 납사(나프타)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종은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기타업종은 구분하여 배치

나) 확장단지

- 1)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
 - 업종별 BLOCK화 배치
 - 관련업종의 인접배치
 - 산업단지 내 교통량 최소화 배치
- 2)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다소비업종을 집합배치(배관망 단축)
 - 용수 다소비업종을 단지 내 용수PIPE 인입지점에 배치
 - 전력 다소비업종 집중배치
 - 공해발생업종은 폐수처리장 부근 배치
- 3) 환경오염의 최소화
 - 주 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업종 배치
 - 산업단지 내 중심 지원시설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배치

다) 연관단지

- 1) 기존 존치공장은 유치업종 계획에 반영
- 2) 자연조건, 환경적측면, 업종별규모, 도로망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
- 3)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계열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로 단지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4) 기존단지간의 협력화 체제 및 지구별 특성에 맞게 업종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m ² , 개사)			
구 분		면 적	업체수
합 계		23,489,573.5	333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22,324,009.8	312
	조립금속	305,920.0	89
	석유화학	21,392,765.2	143
	기 타	625,324.6	80
특정 용도	소 계	1,165,563.7	21
	자원비축시설	601,209.0	6
	폐기물 처리시설	381,706.0	7
	증기 및 열공급시설	9,450.0	1
	물류시설	16,709.0	1
	전력시설	156,489.7	6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신규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공고시 필지별 용도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2)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도구분	세 부 용 도 (시 설 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1,823,000.1	234
특정용도	소 계	489,575	6
	발전소(열병합 포함)	432,054	3
	변 전 소	57,521	3
일반용도	소 계	1,333,425	228
	관리기관 청사	4,086	1
	기타 지원시설	1,329,339	227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산학융합지구 특례) 여수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에 입주 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다) 용수 다소비 및 공해 유발 업종 등 관리기관이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종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

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라)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565.14㎡)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비치)

마)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아)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자(변경승인 포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써 녹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함)

* 환경·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

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건축물이거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로서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

가. 일반사항

(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함.

(2) 또한,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함.,

(3)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와와의 교환을 통한 형상 개량 등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 용지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지산지소 구현을 유도

부칙 <제2025-81호, 2025.06.0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연번	서류명	확인	제출자	비고
1	계약금(매수 대금의 10%) 입금 확인증		공통	
2	매수신청서		공통	붙임1
3	종람확인서		공통	붙임2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통	붙임3
5	신분증		개인	
6	주민등록등본			
7	인감증명서			
8	인감도장			
9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인)			
11	대표자 신분증			
12	법인 인감증명서			
13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14	위임장(위임범위 명확 기재, 본인 인감날인)		대리시 추가 서류	붙임4
15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			
16	본인 신분증 사본			
17	대리인 신분증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붙임1][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2]

종 람 확 인 서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 공고사항, 매매계약서, 분양토지에 대한 제반 정보, 현황, 본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 주차장법, 관련 조례 등) 등 모든 조항을 숙지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인)
(매 수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 시가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시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분양계약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토지분양계약 체결 및 관리, 토지분양대금 납부 안내, 고지 사항 전달, 지방세법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법률 의무사항 이행 등 토지 공급 및 계약자 관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동의 여부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 수집·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수집·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여수시와 진행하는 토지분양계약 등 수집·이용 목적에 명시된 관련 업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4]

위 임 장

□ 수 입 인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위 수임인에게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2025년 2024년

위 임 인

성명 : (인)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여수시장 귀하

<작성 예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2·삼동지구 사전 입주심사 신청서

사업 개요				
업체 현황	명칭 법인일 경우 작성			
	대표자(법인)주소 (개인) 대표자 주소 (법인) 법인 주소			
	성명 성명(입찰자, 계약체결자와 동일)		이메일 주소 입주심사 결과 받을 이메일	
	전화번호1 전화번호 작성		법인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작성	
	전화번호2 비상 전화번호 작성		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 계획	업종(5단위) ‘통계분류포털 표준산업분류코드’ 이용하여 검색			
	주요제품 및 서비스 공급할 제품 또는 서비스 작성			
	주 원자재 공급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자재 작성			
사업장 계획	용도구역	☐ 생산지원시설 ☐ 후생지원시설		
	규모	건축 면적		예상 건축 면적 m²
		근로자수		내국인(남: 여:) 외국인(남: 여:)
	건축물 건설 및 활용계획	용도	건축면적 m²	활용계획
		건물 용도	예상 건축 면적	건물 활용 계획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 목적 설명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 설명		
	기대효과	해당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기재		

이
가
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사업내용은 주력 사업의 사업단지, 입주 필요성, 입주기업체와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 등 기재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2·삼동지구 사전 입주심사 신청서

사업 개요				
업체 현황	명칭			
	대표자(법인)주소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1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2		생년월일	
사업 계획	업종(5단위)			
	주요제품 및 서비스			
	주 원자재			
사업장 계획	용도구역	☐ 생산지원시설 ☐ 후생지원시설		
	규모	건축 면적		m ²
		근로자수		내국인(남: 여:) 외국인(남: 여:)
	건축물 건설 및 활용계획	용도	건축면적 m ²	활용계획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이
이
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사업내용은 주력 사업의 사업단위 임주 필요성, 임주기업체와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 등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사전 입주심사 신청서 제출시 제공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안내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민원처리의 안내, 결과 통보	입주계약체결 전까지

* 단, 유찰자의 개인정보는 낙찰자 선정일까지 보관 후 폐기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제출시 제공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관리/지원 관련 안내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 번호	민원처리의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기업지원 정보 제공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기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이용 기간 및 보유기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대행사	성명, 휴대폰 번호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등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기간
(주)네오플로우 (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상동	시스템 유지보수, 전자서명, 민원처리(비즈메세지)의 안내	상동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메일 주소, 직급	민원처리의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기업지원 정보 제공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기간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귀하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20

회 사 명

대 표 자

직인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 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 현황	업종(5단위)				
	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장 현황	주 소					
	형 태	분양() 경매() 양수() 임차() / 신규 건립() 기존 건물()				
	용도지역					
	지 목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m ²	
건축 면적			m ²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건축 면적률			%			

사업 내용	사업목적	
	기대효과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입주계약체결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사업현황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재표 또는 추정재무재표에 근거하여 작성
4. 사업내용은 주력 사업의 산업단지 입주 필요성, 입주기업체와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 등 기재

2. 건축물 건설 및 활용계획

용 도	건축면적(㎡)	건축시기	활용계획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1. 용도란에는 건축법상 세부용도에 의거 구분하여 기재
2. 건물활용계획란에는 사업내용에 따른 건물활용 계획 기재

3. 건물배치도

※ 작성요령 :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할 것

4.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계획

구 분	제품 및 서비스	단가	수량 (개, 톤, 건 등)	금액 (백만원)
년도				
년도				

5. 주요시설(장비) 현황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kW·m³)	수량 (대식)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종 수 질 ()종 소음·진동(유·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kW/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m³/일)	기타 (톤/일)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분양	[] 임차	[] 양도·양수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물(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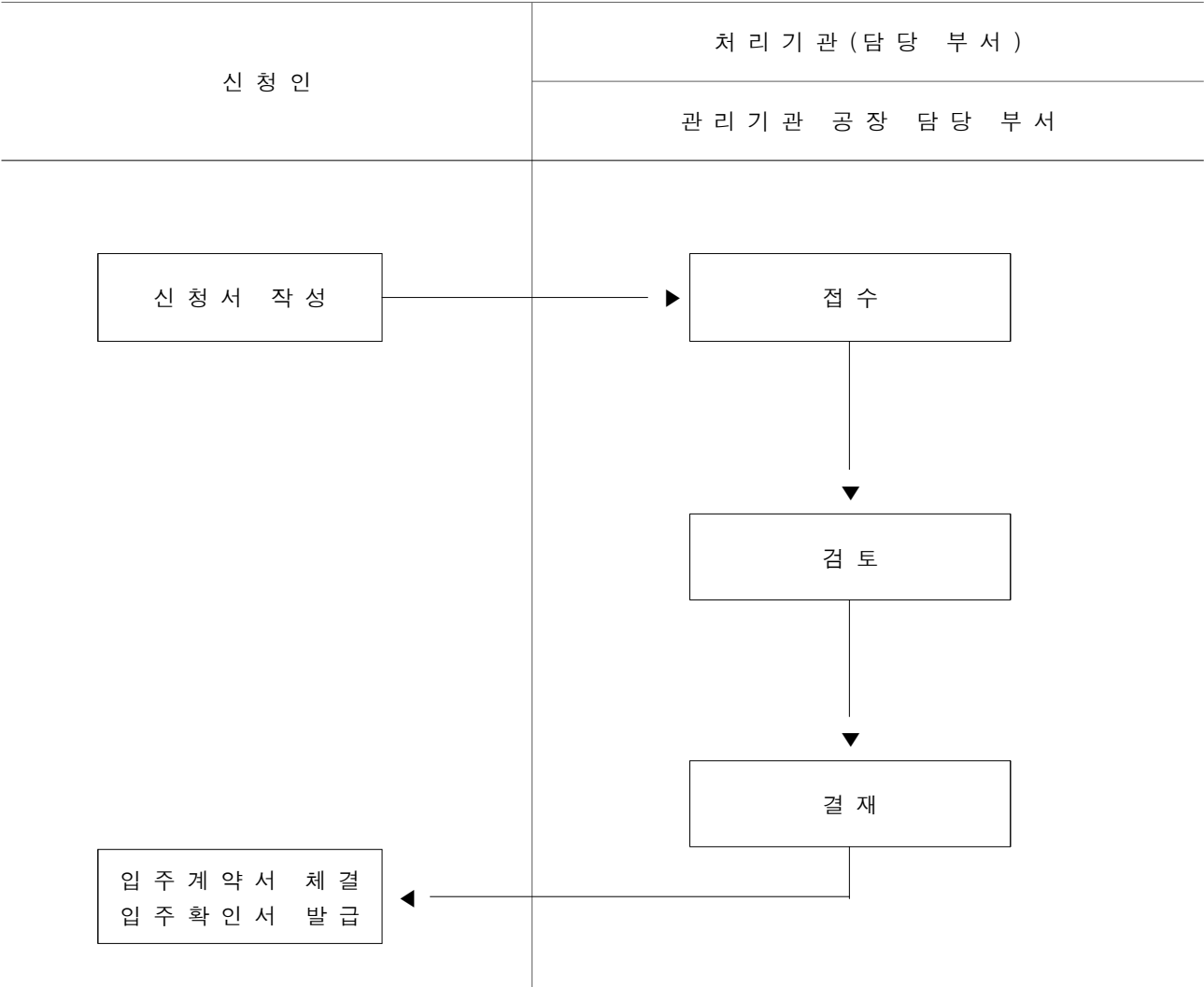
관리기관

직인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027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 모집 공고

2027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여 수 시 장

1 프로그램 개요

가. 운영지침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나. 목 적 :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

다. 기 간 : 2027. 1. ~ 12.(1년)

※ 작년과 달라진 점: (당초)상·하반기 고용주 모집 → (변경)1년치 고용주 모집
라. 비자종류 : 업무협약(MOU)체결 해외지자체 주민 계절근로(E-8-3)

※ MOU체결 대상국 : 필리핀 우바이시

마. 선발방법 : 기초체력검정 및 면접을 통해 현지 직접 선발

바. 고용분야 : 해조류양식, 멸치건조, 굴 양식(선별·세척·까기·포장·
해상채취), 전복종자생산, 멍게류양식

사. 고용기간 : 기본 5개월(최대 8개월)

아. 최대고용 : 어가당 11명(기본 9명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명)

자. 지원내용 : 근로자 선별, 비자발급인정신청 등 행정사항 및 입·출국 지원
차. 추진절차

① 고용주 모집(8월) → ② 숙소 점검 및 선정(9월 초)→ ③ 유치신청(9월 중)
→ ④ 인원배정(10월 초) → ⑤ 근로자 선발 → ⑥ 입국 및 근로(27년 1~12월)

2

신청자격(고용주 요건)

가. 신청대상 : 어가 및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나. 생산규모에 따라 인원 허용인원 배정 *어가 또는 어업법인 허용인원은 같음

다. 고용주 배정 제한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시 1년간 배정 제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금고형 이상 시 3년간 배정 제한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무부 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허위초청, 불법 알선, 불법 고용, 성매매·성폭력범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3)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산재(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미가입, 임금·수당 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력 등

**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

4)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업장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험, 숙소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동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제한 할 수 있음

5)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를 신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인수를 거부하거나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소 및 향후 3년간 배정 제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방적 인수거부 어가 조치 및 근로자 보호 재배치 방침』

다. 업종별 허용 인원과 세부 기준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해 조 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해 조 류 ㉣ 해 조 류 종 자
② 어 패 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 전복종자생산 ㉫ 양미리 그물 털기·선별 ㉬ 새조개 가공(시범) ㉭ 새우 건조(시범)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가리비 해상 채취·포장(시범) ㉯ 굴 해상 채취(시범)_여수시
③ 피 낭 류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멍게류 ㉱ 멍게류 종 자

※ 어선원(E-9, E-10)이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은 계절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

※ 허용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 생산 규모 확인

허용수산물	생산규모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①㉠ 해 조 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 조 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 조 류(양식)	5명 이하						
②㉦㉧ 어 패 류(멸치 등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 패 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②㉬ 어 패 류(전복종자)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②㉮㉯ 어 패 류(양식)	(시범운영) 어가별 3명 이하						
③㉰㉱ 피 낭 류(양식)	어가별 2명 이하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매출액),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세 어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3

고용주 준수사항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관련 규정 준수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컨테이너·창고의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에는 숙소로 사용 가능

나) 숙소 설치금지 장소

-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구조·설비 필수

가) 침실(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 8인 이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나)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라) 취사도구, 침구류

마)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여수시 기준 월 300,000원) *숙소 150,000원, 식사 150,000원

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숙식비 징수 상한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 제공하며 각각 서명·보관

○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실제 입차료 등)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 (예시) 1실(전용 6㎡) 1인 거주 = 30만 원

1실(전용 10㎡) 2인 거주 = 40만 원 ÷ 2인 = 20만 원 등

▶ 다인실의 경우 1인당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1인당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할 것

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
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여 각자 보관(근로계
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소 임금 보장

1) 근로개시 전 또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구인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연도별 최저
임금 변동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여 휴식 부여, 지자체는 교육, 마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서명·교부 확인 후
근로 개시(숙식은 입국 즉시 고용주가 제공, 임금은 근로개시일부터 산정)

나) 근로계약서는 상호 서명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자 보관

2)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 최소보장

☞ 주40시간(월 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권고(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어번기, 혹서
기 등의 월별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상 영향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등 최소임금으로 월 153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휴가기간, 중도 퇴직 등)

다. 임금지급

-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하고 근로시간 등 임금산출 내역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가)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 최소임금 보장, 월 174시간 이상 지급 권고

- 2)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가) 계약기간 중 연도가 달라지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해상작업 20% 가산)

☞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3)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을 별도로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 임금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가족, 중개인 등)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지자체 담당자는 계절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제3자 임금갈취 여부 포함) 정기적으로 면담 실시, 출국 전 정산여부 확인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6.2.15. 시행)」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가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 가산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라.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가)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나)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필수)

-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부여

-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필수 준수사항

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1회 또는 월4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해야 함

나) 공공형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60~62조 참고)

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노동절(5.1.)은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농·어업)은 노동절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연장·휴일근로 50~100% 가산 지급 대상은 아님)

※ (5인 이상 농어업사업장) 소정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인 근로자가 5.1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수당(8시간)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8시간 근로시 총 16시간의 임금 지급

마.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근무처 변경 시 출입국관서에서 사전허가 필요)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 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2)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무 가능(허용 해상작업 외 금지)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예외) 근로자가 국제·국내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고용주가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음주운전 예방 안전 교육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운전 허용

※ 농작업 관련 근로자의 무면허·음주운전 등 적발 시, 고용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고용주에 대한 벌점 부과 가능(외국인근로자도 법 위반시 제재)

바. 산재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

- 1)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는 산재 및 질병·상해·사고,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상 의무보험(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용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의무보험 주요 내용 >

구분			가입·신고 기한	보장내용	보험료 부담	비고
고용주 가입 (① 또는 ②에 반드시 가입)	①	산재보험	근로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고용주 전액 부담	1인 이상 모든 (법인)사업장 - 1인 이상 농어업 법인, 공공형, 5인 이상 농어가는 의무가입 대상임
	②	농·어업인 안전보험	(재입국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고용주 전액 부담	5인 미만 농어가만 산재보험 대신 가입 가능 (2개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임금체불 보증보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근로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고용주 전액 부담	
근로자 가입 (③)	③	상해보험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일상생활 중 사망·상해·질병	근로자 전액 부담*	모든 계절근로자

※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상해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공제방법 등을 사전 합의하고 보험료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교부해야 함)

나) 산재보험 의무가입(5인 이상 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
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계절근로자 5인 이상 고
용한 경우 산재보험에 우선 가입,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제출서류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각 법률에 따라 가입

※ 법인사업장(공공형, 농·어업법인) 등은 직장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

< 농어업고용인력법 상 의무보험 시행 관련 '26년 한시 조치사항 >

1. 제도기간 운영 : '26. 2. 15. ~ '27. 2. 1.4 (해당기간 벌금 부과 면제)

2.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제출서류 확인 조치사항('26년말까지만 적용)

1) 산재보험은 기존 지침대로 적용

2)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확약서 제출

3) 임금체불보증보험 :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확약서 제출

※ 가입확약서 제출시 추후 지자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4) 상해보험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다만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가), 나)에 따름

- * '26.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연장)하고 가입증명서 제출
- 가)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인정
- 나) 본국이나 국내에서 여행자보험과 상해보험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가입확약서나 보험가입증서 제출 시 외국인 등록 처리(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 다)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무처 변경 등)에도 여행자보험으로 전체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 한시 인정
- ※ 근로계약 연장 등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사. 인권보호 및 산업안전 기준 준수

-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협박,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과도한 숙식비 징수 등 인권 침해 금지
- 3) 고용주는 산업 안전·보건조치 등 근로자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등 근로자 적극 보호

* 산업 안전조치, 각종 기상·재해(한파·폭염 등)로 인한 근로 중 사고에 대비한 작업중단,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8. 18.(화) ~ 2026. 9. 1.(화) / 15일간

나. 접 수 처

- 1) (전 업종)여수시청 수산경영과(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 2) (굴 가공)굴수하식수협 여수지소(여수시 충무로 35)

다. 구비서류

- ①신청서(붙임1), ②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약약서(붙임2), ④임금채불보증보험 가입 약약서(붙임3), ⑤숙소시설표(붙임4), ⑥임금지급내역 또는 근로대장(기존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한함), ⑦사업자등록증(사본), ⑧신분증(사본)

라. 재고용 신청시 유의사항

- 1)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서 지자체는 당해연도 9월부터 법무부에 인원배정을 신청함.
- 2) 당해연도 근로자 재고용 신청은 금년 12월중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자를 별도로 수요조사 할 예정임.

※ 단, 날짜와 관계없이 재고용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작성 무관

5 유의사항 및 문의

가. 본 프로그램 신청 후 고용주 준수사항*을 갖추지 못한 고용주는 제외됩니다.

- *①적정 주거 환경 제공 ②임금 및 근로조건 준수 ③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④이탈 방지 및 신고 의무 ⑤ 신청 제외 대상(결격사유)

나. 법무부에서 여수시 총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 061-659-39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7년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자 현황	성명(업체명)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기입)	전화번호
	주소	

구인 사항	사업장 주소(주 작업장)																								
	계절근로자 숙소(예정지 포함) 주소																								
	사업내용(주요 품목):	직무내용																							
	생산규모: 톤 (전년도 기준)																								
	필요인원 : 명 ※ 기타 필요사항 기재	희망 도입 방식																							
	※	[√] MOU, [] 결혼이민자 가족 등 초청 [] 국내체류외국인, [] 도입방식 무관																							
	근로자 모집 구분(희망 인원)	희망 연령: 만 세 ~ 만 세																							
	신규: 명 , 재고용: 명																								
희망 국적 :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기간 : 총 5개월																								
1순위() 2순위()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별 계절근로자 소요 인력(명)																									
<table><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뒤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재고용 신청내역’, ‘월별 계절근로자 신청 현황’ 추가 작성

※ 아래 제출서류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예시)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약약서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약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3. 숙소시설표(붙임) 4. 임금지급내역, 근로대장 등 증빙서류(기존에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고용주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	---

위와 같이2027년 여수시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근로 조건	① 근로시간		- 소정근로요일: 요일 ~ 요일 -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월 ()시간 ※ 농번기·성어기, 농한기·어한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② 휴게시간		1일 ()회, ()시간 ()분 ※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③ 휴일		[] 주 1회, [] 월 4회 [] 그 밖의 경우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④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임금: 2,236,300원([√]월급, []시간급, []일급, []주급)
			상여금 및 수당	[√]지급(상여금: 원/(월), 수당: 16,050원/(시간), []미지급 ※ (필수기재)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16,050)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	()부터 ()까지* 계산하여 [] 그 달 / [] 그 다음 달 ()일 또는 [] 그 주 / [] 그 다음 주 ()요일에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⑤ 숙식 제공	숙박	[] 제공	숙박시설 []주택, []숙박시설(여관, 호텔, 펜션 등), 유형 []사업장 건물, []조립식 숙소, []그 밖의 숙박시설 숙박비용 [√] 근로자 부담(매월 150,000원), [] 미부담
식사			[√] 제공	[√]조식, [√]중식, []석식 : 근로자 부담(매월 150,000원) [] 식사비용 근로자 미부담(고용주가 무상 제공)
		[] 미제공		
⑥ 기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고용 신청 내역 >

고용주 사실관계 기재란 (필수 기재)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이 없으며 근로조건을 준수하였음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음 • []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음 • [] 계절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함(동의 [] 비동의[])

재고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우선 순위	성명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총 근로계약 일수	실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의 75% 총족 여부
					일	일	○ / X

※ 참고사항(필요시 기재)

월별 계절근로자 신청내역

입국월	인원			재입국자	비고
	계	남	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신청시 일정 변경이 불가함으로 신중히 신청바람.

신청인 :

[인/서명]

【붙임2】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협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3】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협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협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협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4】

숙소 시설표 Residence/Accommodation Facility Information	
근무(예정)처 현황 【Workplace (expected) Information】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소재지 (Address)
대표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ephone No.)
시설 현황 【Facility Information】	
주거시설 유형 Type of Residential Facility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주택 등) House (detached house, townhouse, apartment, etc.) ☐ 고시원 Gosiwon(a kind of single room occupancy class of building) ☐ 오피스텔 Officetel(ex: a one-room apartment)
	☐ 숙박시설 Accommodation
	☐ 가설 건축물 (종류:) Temporary Building (Type:)
	☐ 기타 () Others () ☐ 주거시설 내 혼숙 인원 : 명 Number of male and female workers sharing a room inside the residential facility: persons
내부시설 Internal Facilities	침실 Bedroom ☐ 남녀구분 Men and women separated ☐ 남녀미구분 Men and women Not separated ☐ 1인당 침실 크기 Bedroom size per person: (침실 1개 당 인원 : 명)(Persons per bedroom: persons) ☐ 잠금장치 유 Locking system Installed ☐ 잠금장치 무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화장실 등 Bathroom, etc. ☐ 숙소 내부 Inside the Accommodation ☐ 숙소 외부 Outside the Accommodation ☐ 잠금장치 유 Locking system Installed ☐ 잠금장치 무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 수세식 Flush toilet ☐ 재래식 Pit latrine toilet ☐ 입식세면대 Standing washbasin ☐ 샤워시설 Shower facility ☐ 욕조 Bathtub ☐ 온수 사용 가능 Hot water available ☐ 온수 사용 불가 Hot water Not available
	냉·난방시설 Cooling·Heating Facilities ☐ 있음 Installed ☐ 없음 Not Installed ☐ (냉방) 종류: (Cooling) Type ☐ (난방) 종류: (Heating) Type
	채광 및 환기시설 Lighting and Ventilation Facilities ☐ 있음 (종류:) Installed (Type:) ☐ 없음 Not Installed
	소방시설 Firefighting Facilities ☐ 설치 Installed ☐ 미설치 Not Installed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19.(수) ~ 2026. 8. 30.(일)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 02-3774-5500]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다. 설 계 자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6(계림동) 신양빌딩 ㈜이건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양상훈

라.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안산동 737번지
- 대지면적 : 32,466.1㎡
- 연 면 적 : 121,072.3939㎡
- 규 모 : 아파트 8개동 (지하4층 / 지상 25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 세 대 수 : 593세대
- 공사기간 : 2020. 5. 15 ~ 2027. 10. 31.
- 사업승인일 : 2020. 5. 15.

바. 안전점검비용 : 96,043,660원(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 초 금 액 : 93,162,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단위	횟수	비 고
정기 점검	건축물	회	3	※ 일정 및 횟수, 점검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회	2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갯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초기 점검	건축물	회	1	
계			12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8.31.\(월\) 10:00 ~ 2026.9.4.\(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라.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2)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 [2026.9.4.\(금\)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 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9.7.\(월\) 09:00 ~ 2026.9.11.\(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9.14.\(월\) 09:00 ~ 2026.9.18.\(금\) 12: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서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이의제기 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사진 촬영 불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2026. 7. 24.]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 7. 24.)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별표2]

※ 낙찰하한율(86.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 95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7)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여수시 건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함.

10.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4) 서약서(서식6)(인감날인)
- 5)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서식 1]
 -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서식 2]
 - 6)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3] 및 증빙서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및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7) 업무중첩도[서식4] 및 증빙서류
 - 8)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9)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서식5]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 업무중첩도 및 증빙서류
 - 10)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 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 4)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이 없는 업체의 입찰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릅니다.
-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 및 가설구조물 등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안전점검 비용은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 까지도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끝.

(표지 양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사명 : 여수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입찰자(대표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4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수행실적	실적(건수)	15			예) 정기안전점검(건)
		실적(금액)	15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업무중첩도		5			예) 0개소(00신축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투자실적	2			예) 00(%)
	계		50			
책임 기술자	자격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경력		7			예) 00(년)
	실적		12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2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30			
참여 기술자	자격		6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6			예) 00(년)
	실적		5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2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수행실적	30					
(가) 실적(건수)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나) 실적(금액)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금액 × 0.8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예) 최근 5년간 실적계산 방법(이하 실적계산 방식 동일) ① 안전점검이 준공된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 까지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준공실적(원)=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②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7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7.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5.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5. 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수행실적(원)=30억(원)×{[(4년×365일)+243일]÷(7년×365일)}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1.5배를 적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산출근거		- 금액 : 억원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산출근거		- 개소 :	평가점수 : 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table><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tr><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tr><td>건축구조기술사</td><td>기타 자격없음</td></tr><tr><td>6.0</td><td>4.5</td></tr></table>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r></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2.0</td><td>11.4</td><td>10.8</td><td>10.2</td><td>9.6</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480 219 1391 286"> <tr> <td>1개소 이하</td> <td>2개소</td> <td>3개소</td> <td colspan="2">4개소 이상</td> </tr> <tr> <td>2.0</td> <td>1.5</td> <td>1.0</td> <td colspan="2">0.5</td> </tr> </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data-bbox="480 656 1391 741"> <tr> <td>고급 이상</td> <td>중급</td> <td colspan="3">초급</td> </tr> <tr> <td>6.0</td> <td>5.0</td> <td colspan="3">4.0</td> </tr> </table>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 border="1" data-bbox="480 1070 1303 1189">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6.0</td> <td>5.5</td> <td>5.0</td> <td>4.5</td> <td>4.0</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5	5.0	4.5	4.0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5	5.0	4.5	4.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 border="1" data-bbox="467 1494 1383 1612">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5.0</td> <td>4.7</td> <td>4.4</td> <td>4.1</td> <td>3.8</td> </tr> </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7	4.4	4.1	3.8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7	4.4	4.1	3.8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VAT 미포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점검 · 진단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3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 야	성 명	구 분	정 지 기 간	사 유 및 제 재 기 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4]

업무 중첩도

연 번	용 역 명	준 공 금 액 (천 원)	발 주 처	용 역 기 간	참 여 분 야	비 고
합 계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른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여 수 시 장

1. 관련근거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1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조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로 160, 4층	건축
2	(주)우리안전기술원	윤영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고지5길 3	건축
3	(주)미스터스트럭처 기술사사무소	김장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우정로 72, 416호	건축
4	(주)케이제이 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 3층	건축
5	대한건설기술단(주)	김보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중앙로 317	건축
6	메타구조안전원(주)	서동진 염환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동 70, 4층	건축, 토목
7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강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자보 3길 58, 4층	건축
8	주식회사 다운에스텍	진선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49, 702호	건축

9	(주)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75, 2층	건축
10	(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주식회사	정호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당길 31	건축
11	(유)양호기술	송양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29, 2층	건축
12	(주)강한이앤씨	최운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43-1	건축
13	무안이앤지(주)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50, 1층	건축
14	(주)신라이앤씨	신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삼봉산로21, 204호	건축
15	(주)정진이앤씨	최재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읍 남문길52, 3층	건축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2026. 7. 24.]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 \pm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총 관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2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2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8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8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2과 같다.

[별표2] (점검비용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세부평가방법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tr><td>점수</td><td>회사채</td><td>기업어음</td><td>기업신용</td></tr><tr><td>5.0</td><td>BBB- 이상</td><td>A3- 이상</td><td>BBB- 이상</td></tr><tr><td>4.0</td><td>BBB- 미만 B- 이상</td><td>A3- 미만 B- 이상</td><td>BBB- 미만 B- 이상</td></tr><tr><td>3.0</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CCC+ 이하</td></tr></table>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2) 수행실적	30																	
(가)실적(건수)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나)실적(금액)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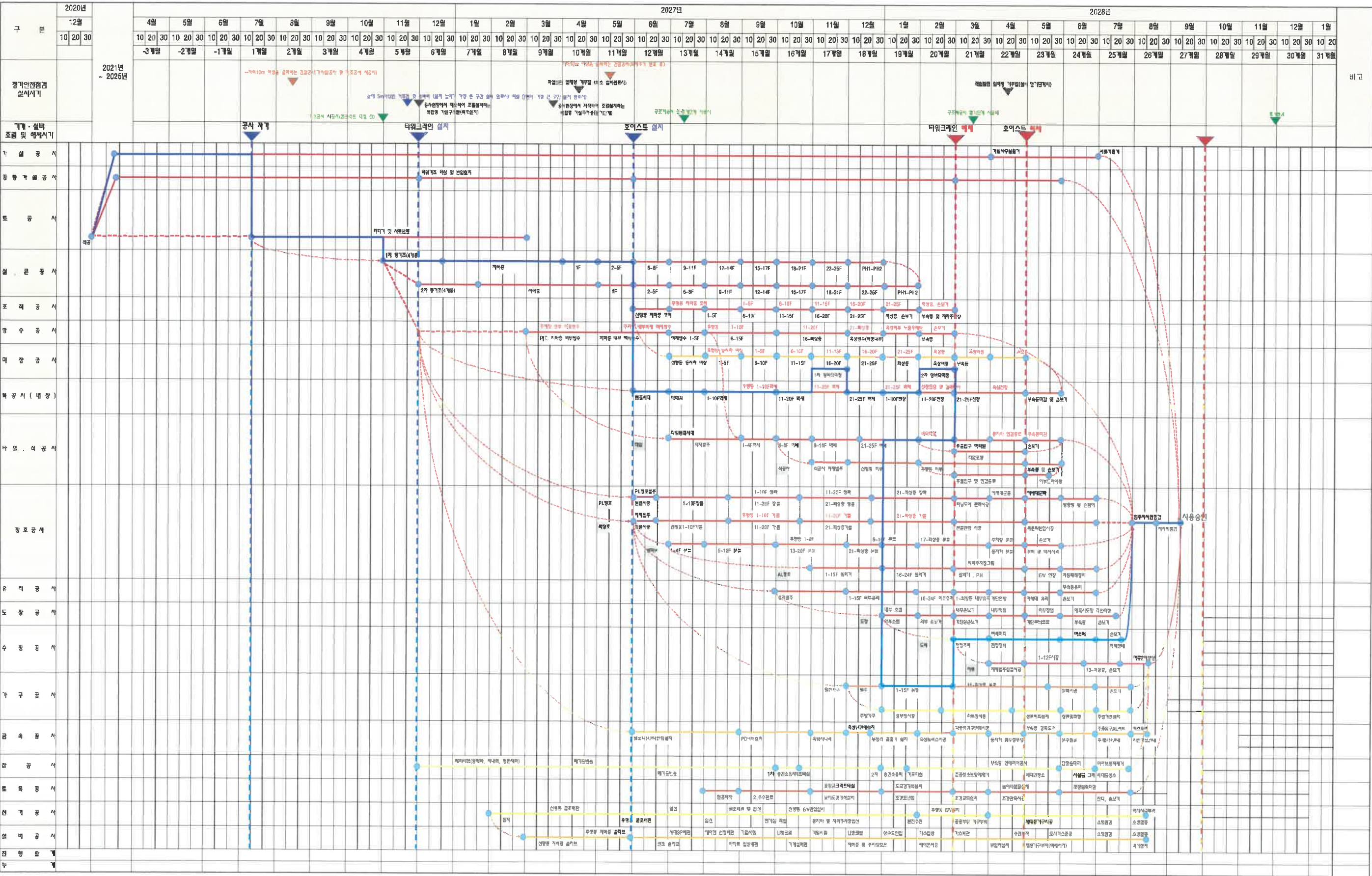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금액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금액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table><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tr><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나.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 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tr><td colspan="2">건축구조기술사</td><td colspan="3">기타 자격없음</td></tr><tr><td colspan="2">6.0</td><td colspan="3">4.5</td></tr></table>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r></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2.0</td><td>11.4</td><td>10.8</td><td>10.2</td><td>9.6</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2.0</td><td>1.5</td><td>1.0</td><td>0.5</td></tr></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d>고급 이상</td><td>중급</td><td>초급</td></tr><tr><td>6.0</td><td>5.0</td><td>4.0</td></tr></table>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7년이상</td><td>7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6.0</td><td>5.5</td><td>5.0</td><td>4.5</td><td>4.0</td></tr></table>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5.0</td><td>4.7</td><td>4.4</td><td>4.1</td><td>3.8</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여수 안산동 1단지 현장 예정 공정표

현장명 : 여수안산동 1단지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7년 10월 31일 (93개월)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19.(수) ~ 2026. 8. 30.(일)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 02-3774-5500]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다. 설 계 자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6(계림동) 신양빌딩 ㈜이건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양상훈

라.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안산동 738번지
- 대지면적 : 20,456.3m²
- 연 면 적 : 65,443.3751m²
- 규 모 : 아파트 5개동 (지하4층 / 지상 21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 세 대 수 : 287세대
- 공사기간 : 2020. 5. 15 ~ 2027. 10. 31.
- 사업승인일 : 2020. 5. 15.

바. 안전점검비용 : 74,922,710원(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 초 금 액 : 72,675,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단위	횟수	비 고
정기 점검	건축물	회	3	※ 일정 및 횟수, 점검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
	천공기를 사용하는 공사	회	2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회	2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초기 점검	건축물	회	1	
계			16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8.31.\(월\) 10:00 ~ 2026.9.4.\(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라.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2)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 [2026.9.4.\(금\)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9.7.\(월\) 09:00 ~ 2026.9.11.\(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9.14.\(월\) 09:00 ~ 2026.9.18.\(금\) 12: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서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이의제기 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방법 : 여주시청 허가과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사진 촬영 불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여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주시 공고 제2026-2311호, 2026. 7. 24.]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 7. 24.)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별표2]

※ 낙찰하한율(86.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 95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7)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여수시 건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함.

10.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4) 서약서(서식6)(인감날인)

5)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서식 1]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서식 2]

6)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3] 및 증빙서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및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7) 업무중첩도[서식4] 및 증빙서류

8)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9)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서식5]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 업무중첩도 및 증빙서류

10)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 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 4)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이 없는 업체의 입찰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릅니다.
-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 및 가설구조물 등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안전점검 비용은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나라장터 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 까지도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끝.

(표지 양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사명 : 여수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입찰자(대표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4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수행실적	실적(건수)	15			예) 정기안전점검(건)
		실적(금액)	15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업무중첩도		5			예) 0개소(00신축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투자실적	2			예) 00(%)
	계		50			
책임 기술자	자격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경력		7			예) 00(년)
	실적		12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2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30			
참여 기술자	자격		6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6			예) 00(년)
	실적		5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2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수행실적	30														
(가) 실적(건수)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 이상</td><td>10건미만 8건 이상</td><td>8건미만 6건 이상</td><td>6건미만 4건 이상</td><td>4건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나) 실적(금액)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금액 × 0.8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예) 최근 5년간 실적계산 방법(이하 실적계산 방식 동일) ① 안전점검이 준공된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 까지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준공실적(원)=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②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7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7.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5.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5. 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수행실적(원)=30억(원)×{[(4년×365일)+243일]÷(7년×365일)}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1.5배를 적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산출근거		- 금액 : 억원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산출근거		- 개소 :	평가점수 : 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table><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tr><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tr><td>건축구조기술사</td><td>기타 자격없음</td></tr><tr><td>6.0</td><td>4.5</td></tr></table>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r></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2.0</td><td>11.4</td><td>10.8</td><td>10.2</td><td>9.6</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480 219 1391 286"> <tr> <td>1개소 이하</td> <td>2개소</td> <td>3개소</td> <td colspan="2">4개소 이상</td> </tr> <tr> <td>2.0</td> <td>1.5</td> <td>1.0</td> <td colspan="2">0.5</td> </tr> </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data-bbox="480 656 1391 741"> <tr> <td>고급 이상</td> <td>중급</td> <td colspan="3">초급</td> </tr> <tr> <td>6.0</td> <td>5.0</td> <td colspan="3">4.0</td> </tr> </table>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 border="1" data-bbox="480 1070 1303 1189">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6.0</td> <td>5.5</td> <td>5.0</td> <td>4.5</td> <td>4.0</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5	5.0	4.5	4.0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5	5.0	4.5	4.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 border="1" data-bbox="467 1494 1383 1612">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5.0</td> <td>4.7</td> <td>4.4</td> <td>4.1</td> <td>3.8</td> </tr> </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7	4.4	4.1	3.8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7	4.4	4.1	3.8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VAT 미포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점검 · 진단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3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 야	성 명	구 분	정 지 기 간	사 유 및 제 재 기 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4]

업무 중첩도

연 번	용 역 명	준 공 금 액 (천 원)	발 주 처	용 역 기 간	참 여 분 야	비 고
합 계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서식5]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illegible]

[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른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여수시장

1. 관련근거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1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조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로 160, 4층	건축
2	(주)우리안전기술원	윤영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고지5길 3	건축
3	(주)미스터스트럭처 기술사사무소	김장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우정로 72, 416호	건축
4	(주)케이제이 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 3층	건축
5	대한건설기술단(주)	김보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중앙로 317	건축
6	메타구조안전원(주)	서동진 염환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동 70, 4층	건축, 토목
7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강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자보 3길 58, 4층	건축
8	주식회사 다운에스텍	진선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49, 702호	건축

9	(주)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75, 2층	건축
10	(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주식회사	정호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당길 31	건축
11	(유)양호기술	송양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29, 2층	건축
12	(주)강한이앤씨	최운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43-1	건축
13	무안이앤지(주)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50, 1층	건축
14	(주)신라이앤씨	신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삼봉산로21, 204호	건축
15	(주)정진이앤씨	최재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읍 남문길52, 3층	건축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2026. 7. 24.]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 \pm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총 관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2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2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8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8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2과 같다.

[별표2] (점검비용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세부평가방법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tr><td>점수</td><td>회사채</td><td>기업어음</td><td>기업신용</td></tr><tr><td>5.0</td><td>BBB- 이상</td><td>A3- 이상</td><td>BBB- 이상</td></tr><tr><td>4.0</td><td>BBB- 미만 B- 이상</td><td>A3- 미만 B- 이상</td><td>BBB- 미만 B- 이상</td></tr><tr><td>3.0</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CCC+ 이하</td></tr></table>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2) 수행실적	30																	
(가)실적(건수) (나)실적(금액)	15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금액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금액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table><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tr><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 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tr><td colspan="2">건축구조기술사</td><td colspan="3">기타 자격없음</td></tr><tr><td colspan="2">6.0</td><td colspan="3">4.5</td></tr></table>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r></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2.0</td><td>11.4</td><td>10.8</td><td>10.2</td><td>9.6</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2.0</td><td>1.5</td><td>1.0</td><td>0.5</td></tr></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d>고급 이상</td><td>중급</td><td>초급</td></tr><tr><td>6.0</td><td>5.0</td><td>4.0</td></tr></table>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7년이상</td><td>7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6.0</td><td>5.5</td><td>5.0</td><td>4.5</td><td>4.0</td></tr></table>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5.0</td><td>4.7</td><td>4.4</td><td>4.1</td><td>3.8</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여수 안산동 2단지 현장 예정 공정표

현장명 : 여수안산동 2단지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7년 10월 31일 (94개월)

[illegible]

소하천 점용 (변경)허가 공고(중방천, 덕개천, 연화지천)

여수시 공고 제2026-2562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변경)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제2003-22호	중방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63	에어리퀴드 코리아(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치동 257번지	13	공업용 가스 이송 파이프랙 및 배관	1999.12.03. 2029.06.30.	권리의무 승계
			에어리퀴드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주)					
제2003-23호	중방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63	에어리퀴드 코리아(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치동 257번지	73	공업용 가스 이송 파이프랙 및 배관	1999.06.11. 2029.06.30.	권리의무 승계
			에어리퀴드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주)					
제2013-06호	중방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63	에어리퀴드 코리아(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치동 257, 월하동 200-148번지	577	원료 이송용 배관(4개소)	2013.07.01. 2028.06.30.	권리의무 승계
			에어리퀴드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주)					
제2022-16호	중방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2로 263	에어리퀴드 코리아(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치동 257번지	10.2	원료 및 제품 이송용 파이프랙	2022.08.10. 2027.12.31.	권리의무 승계
			에어리퀴드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주)					
제2026-13호	덕개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821번지	440	수문	2026.08.18. 2031.06.30.	신규
제2026-14호	덕개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548-2번지	30	저수지 관리시설	2026.08.18. 2031.06.30.	신규
제2026-15호	연화지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산190-3번지	35	저수지 관리시설	2026.08.18. 2031.06.30.	신규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3차)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상 협의하고자 문서를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다. 사업위치 : 여수시 시전동 674-2번지 일원
- 라. 사업기간 : 2019. 9. 26. ~ 2026. 12. 31.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9월 4일(15일간)
-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여수시 공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 (☎061-659-4634)
-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마. 협의조건

-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가 있는 경우 해지 또는 말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후 협의 가능

바.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 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공시송달 대상

□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시전동	674-2	전	257	257	등기없음		토지대장상 소유자	류O현	학용리	
2	시전동	714	묘	112	112	등기없음		토지대장상 소유자	이O홍	율촌면 조화리	
5	시전동	927	임	347	347	문O동	여수시 웅남O길 OO(웅천동)	상속대상자	문O운	여수시 웅남O길 OO (웅천동)	
								상속대상자	문O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000번길 OO (주안동, 000000)	
								상속대상자	문O환	광양시 광양읍 용강O길 OO, 000동 000호 (00000000)	
								상속대상자	문O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000 번길 OO 000동 000호 (원종동, 00000000)	
								상속대상자	문O순	광양시 진동길 OO, 000동 0000호 (중동, 000000000000)	
								상속대상자	문O석	여수시 웅남O길 OO (웅천동)	
								상속대상자	문O길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OO, 000동 000호(00000000)	
6	시전동	산146-1	임	17	17	최O조	여수시 쌍봉로 000, 0동 000호(둔덕동, 000000000000)				
7	시전동	산152	임	595	595 *1/6	곽O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00길 OO(천호동)				
9	시전동	산160	임	2,975	2,975	김O렬	여수시 신기남O길 O-O(신기동)	상속대상자	서O엽	여수시 신기남O길 O-O(신기동)	
								상속대상자	김O인	여수시 무선2길 OO, 000동 000호(선원동, 000000)	
								상속대상자	김O호	여수시 웅천남8로 OO, 000동 0000호 (웅천동, 000000000000)	
10	시전동	산166	임	694	694	등기없음		토지대장상 소유자	유O영	여수면 동정	
12	시전동	산170	임	793	793	등기없음		토지대장상 소유자	조O숙		
13	웅천동	776-2	전	942	942	등기없음		토지대장상 소유자	문O환	웅천리 000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토지대장상 소유자	문O숙		
								토지대장상 소유자	문O규		
								토지대장상 소유자	문O규		
14	웅천동	776-5	임	4,059	4,059 *14/567	문O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O길 OO-O(금암동)				
15	웅천동	산24	임	694	694 *14/567	문O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O길 OO-O(금암동)				
17	웅천동	산41	임	595	595	정O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000-O				

□ 물건조서

연번	토지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	시전동	872	울타리	그물망	12.0	m	미상				
	시전동	872	매실나무	H1.5-3 R5-12	6.0	주					
	시전동	872	아로니아	H1	3.0	주					
	시전동	872	헛개나무	H3 R10	1.0	주					
	시전동	872	옻나무	H2 R5	2.0	주					
	시전동	872	감나무	H3 R10	1.0	주					
	시전동	872	오가피	H1 W1	3.0	주					
5	시전동	875-1	드릅나무	R5-8	250.0	주	미상				
	시전동	875-1	감나무	R10 H3	1.0	주					
	시전동	875-1	옻나무	R10 H3	2.0	주					
6	시전동	917-1	울타리	그물망	30.0	m	미상				
10	시전동	940	울타리	그물망	15.0	m	미상				
	시전동	940	농막	1.5x2.6 목조췌나이트	3.9	㎡					
	시전동	940	물탱크	100L	4.0	식					
	시전동	940	울타리	그물망	60.0	m					
11-2	시전동	산130-5	분묘		1.0	기	미상				
	시전동	산130-5	석축	자연석 H1	11.0	m					
12	시전동	산137-1	분묘		2.0	기	미상				
	시전동	산137-1	상석	1.1*0.8*0.25 w/복석 하박석	1.0	식					
	시전동	산137-1	향로석	0.15*0.15	1.0	식					
15-1	시전동	산169	분묘		1.0	기	미상				
15-3	시전동	산169	분묘		1.0	기	미상				
	시전동	산169	석축	자연석	2.0	m					
17-2	웅천동	756-3	분묘	유연단장	1.0	기	문O영	여주시 여서로 000 000동0000호(여서동, 00000000)			
	웅천동	755-3	석축	자연석	2.0	m					
20	웅천동	905	감나무	H2.5 R15 15년생	1.0	주	미상				
	웅천동	905	울타리	그물망	200.0	m					
25-1	웅천동	946	분묘		2.0	기	미상				
	웅천동	946	석축	자연석	3.0	m					
25-2	웅천동	946	분묘		1.0	기	미상				
27-1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연번	토지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7-4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웅천동	산17	비석	H0.7 W0.25	1.0	식	미상				
27-8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9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10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김O빈	여수시 여서O로 OO OOO동 OOO호(여서동 OOOOOOO)			
	웅천동	산17	상석	0.7*0.4*0.3w 하박석	1.0	식	김O빈				
	웅천동	산17	반월석	W0.3	1.0	식	김O빈				
	웅천동	산17	향로석	0.15*0.15	1.0	식	김O빈				
	웅천동	산17	비석	H0.8 W0.2 오석	1.0	식	김O빈				
	웅천동	산17	황금측백	H1.2 W0.8	1.0	주	김O빈				
27-11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정O현	여수시 웅천로 000-O, O층 (웅천동)			
	웅천동	산17	판석	1.2*0.6	1.0	식	정O현				
27-12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16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17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18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19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20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21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정O현	여수시 웅천로 000-O, O층 (웅천동)			
	웅천동	산17	둘레석	사각 화강석	1.0	식	정O현				
	웅천동	산17	판석	1.2*0.6	1.0	식	정O현				
27-24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26	웅천동	산17	분묘		2.0	기	미상				
27-31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32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34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36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37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38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41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27-43	웅천동	산17	분묘		1.0	기	미상				
	웅천동	산17	판석	1*0.4	1.0	식	미상				
34-2	웅천동	산41	분묘		3.0	기	미상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돌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3차)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돌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상 협의하고자 문서를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돌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다. 사업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177번지 일원
- 라. 사업기간 : 2020. 6. 25. ~ 2027. 6. 30.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9월 4일(15일간)
-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여수시 공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 (☎061-659-4634)
-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마. 협의조건

-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가 있는 경우 해지 또는 말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후 협의 가능

바.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 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공시송달 대상

☐ 토지조서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1-2	돌산읍 우두리	799 -177	전	907	907 *4/20	유O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OO, 000동 0000호(한강로3가, 000000000000)				

☐ 물건조서

연 번	토지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돌산읍 우두리	799 -240	무궁화	H3	13.0	주	미상				
			울타리	그물망	30.0	m					
			무궁화	H3	7.0	주					
			울타리	그물망	30.0	m					
			매실나무	H4	1.0	주					
			물통	FRP 1ton	1.0	식					
			팔손이	H2	3.0	주					
			앵두나무	R3 R20	2.0	주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8.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주)케이베츠	여수시 남면 안도리(외삼도) 산68 북동측으로 약 1.3km 이격된 해역	15MW급 고정식 해상 풍력단지 자켓 지지구조 운송·설치공법 개발 및 지반조사	2,500㎡	허가일 ~ 2028. 9. 30.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8. 18. ~ 2026. 9. 3.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18. ~ 2026. 9. 3.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beagywns@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8급 배효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하부구조물 설치



지반조사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면세휘발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 사 업 비 : 127,000천 원(특별시비 50,800^{40%}, 시비 76,200^{60%})
- 사 업 량 : 면세휘발유 1,229천 리터(1,229,000 ℓ)

2. 사업대상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 대상어선 : 「어선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어선
 -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3. 지원내용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지원단가 :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2026년 4월 어업용 면세휘발유 공급가격*(1,158.7원/ℓ) - ^{26년 3월 공급가격} 771원/ℓ} × ^{보조율} 30% ≒ 116.3원/ℓ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통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4. 제외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다만 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여수시가 신청 관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 면세유 부정 유출 등으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 자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5. 신청기간 : 2026. 8. 21. ~ 9. 10.

6. 신청장소(방문접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8. 문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061-659-3921)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기재, 이중 신청, 면세유의 어업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정세, 유가, 관련 지침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1부. 끝.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사업장 위치)			
	연락처	면세유카드 금융기관 계좌번호		
	어업기반	(예시) 00호(00허가 2021-1호, 0톤), 00호(00양식면허 2021-1호, 00톤)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수시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구매사업정보시스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담당자 확인	소 속	시군	읍면	성명	(인)
※ 「어업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 시 밑줄 친 정보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V또는 O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서명은 “도장 날인 또는 서명” 모두 가능합니다. ※ “담당자 확인” 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 「어업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 시 밑줄 친 정보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 “도장 날인 또는 서명” 모두 가능합니다.

※ “담당자 확인” 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일반재산[제3송학호] 선박·장비 등 일괄 매각 입찰 공고

우리 시 일반재산(제3송학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기관·장비 등 일체를 매각하고자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입찰】

- 가. 건명 : 제3송학호 선박·장비 등 매각
- 나. 매각대상 물건 : 제3송학호의 선체, 기관, 장비 등 6점(붙임 목록 참조)
 - 보관 장소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421-20(송도선착장)
- 다. 예정가격 : 금33,487,200원(금삼천삼백사십팔만칠천이백원) *최초 예정가격 : 41,859,000원
-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2026. 8. 19.(수) 09:00 ~ 2026. 8. 26.(수) 18:00
- 마. 개찰 일시 : 2026. 8. 27.(목) 10:00
- 바. 개찰 장소 :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을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 주소  <http://www.onbid.co.kr>

-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나.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유효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결정)
- 나. 동일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온비드” 시스템의 “자동결정”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되므로 별도의 입찰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 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 나. 낙찰자는 매매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일시불, 1천만원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 다. 구비서류
 - 1)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 3)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 신분증
 - 4) 공 통 : 계약보증금 납부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 라. 계약체결 장소: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섬지원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4층)
- 마.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장비 등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 실물확인을 희망할 경우 여주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3)에 사전연락 요망

- 라. 낙찰자는 매각물건 인수에 필요한 운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인수 과정에서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마. 낙찰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및 그 밖의 요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 이나 행정 또는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 프로그램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 담당자(☎1588-5321)로 문의하시고,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여주시청 섬발전지원과(☎061-659-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붙임 1. 매매계약서 1부.
2. 기관·장비 인수인계서 1부.
3. 기관·장비 매각 명세표 1부. 끝.

제3송학호 선박 등 매매계약서

☐ 물품의 표시 : 제3송학호 선박·장비 등 (별지목록)

위 선박·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여수시장 : 이하 “甲”이라한다)과 매수인(이하 “乙”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기관·장비 등의 매매에 있어 “乙”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완납한다.

매매대금	합	계	금	원(금	원)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금회입금액	금	원(금	원)	

제1조 : “乙”은 선박의 인수에 있어 “甲”의 일정에 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 : 계약 후 “乙”은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확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 : “乙”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 : “乙”은 선박 매각 공고내용에 기재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이 교체,분실, 선박소유자 임의매각을 제외 하고는 인수·인계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사전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乙”에게 있으며, 변상조치는 불가함)

제5조 : 선박 등의 인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乙”이 부담한다.

제6조 : “乙”은 기관·장비 등의 인수 후에 기관·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乙”이 책임을 지며“甲”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제7조 : “乙”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甲”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 “乙”은 인수·인계된 물건에 대하여 인수·인계 즉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나 방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 “甲”과 “乙”은 미 인수·인계 물건에 대하여는 입찰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甲”과 “乙”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매수인 (乙)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	------	-----------	-----

매도인 (甲)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성명(법인명) : 여수시장	(인)
------------	------------------------	----------------	-----

선박 등 등 인수인계서

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 완료 하였는바, 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시 / 장소 : 2026. . . /

인수자	성명	(인)
	주소	(전화 : - -)
인계자	성명	(인)
	주소	(전화 : - -)

[illegible]

제3송학호 선체 및 기관 등 명세

연 번	품 명	규 격 · 형 식	수 량	평 가 금 액 (원)		평 균 가 격 (원)
				하 나 감 정	대 상 감 정	
1	선 체	종류: 기선 선질: FRP 총 톤수 9.77G/T	1 기	34,781,200	33,901,900	34,341,550
2	주 기관 (Main Engine)	Diesel 230PS	1 기	5,290,000	5,750,000	5,520,000
3	플로터 (GPS Plotter)	NF100	1 대	632,000	632,000	632,000
4	무전기	STR-6000B	1 대	173,000	190,000	181,500
5	레이더	Type : MRD-104 SERIAL NO : 10402939	1 대	1,100,000	1,190,000	1,145,000
6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Type : TJT-DCP-4.8 총중량 : 7.7kg	2 대	40,000	38,000	39,000
	계			42,016,200	41,701,900	41,859,050
					절 사	41,859,000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신덕동 455번지 외 6필지(452-3, 453-1, 453-2, 454, 454-1, 455-1번지)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 8. 18.

여 수 시 장

- 1. 위 치 : 여수시 신덕동 455-1번지 외 2필지(453-2, 454-1번지)
- 2. 도로면적 : 23㎡
- 3. 도로길이 : 18.8m
- 4. 도 로 폭 : 1.4m
-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202	24	
	신덕동	455	전	96	9	
	신덕동	454	대	50	10	
	신덕동	453	대	56	5	
변경	계			23	23	
	신덕동	455-1	전	9	9	
	신덕동	454-1	대	10	10	
	신덕동	453-2	대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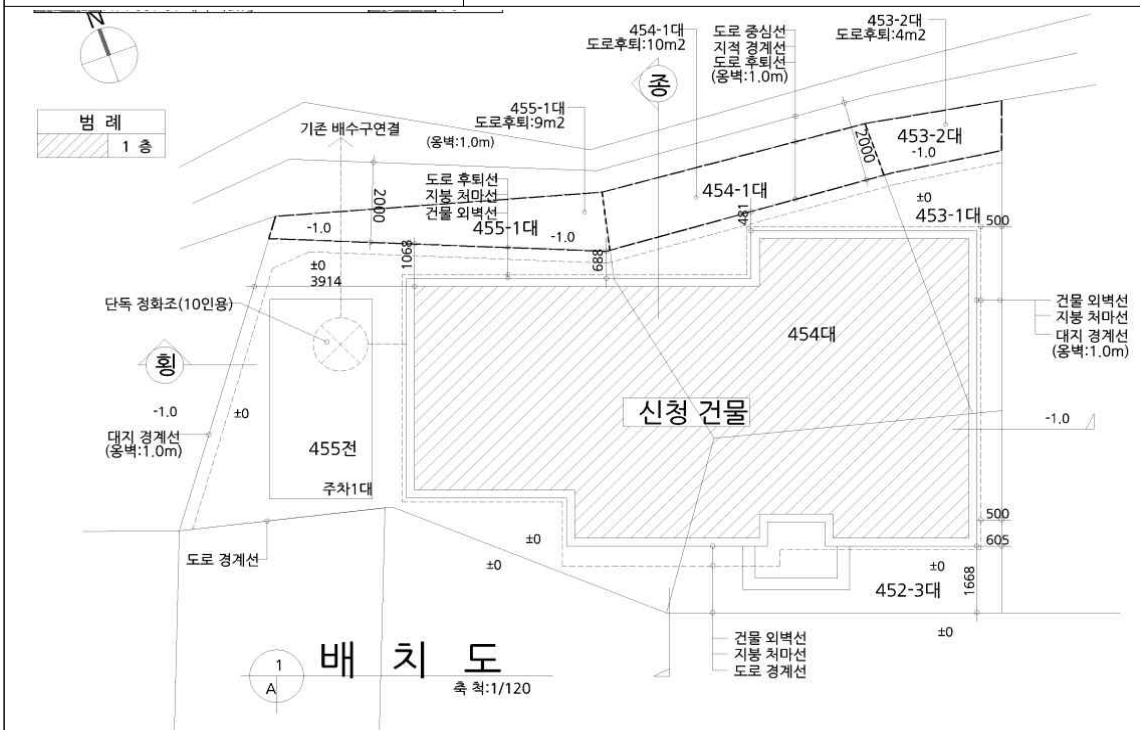
※ 당초 도로 지정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6-1239호(2026. 4. 13.)

-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위 치 도



현 황 도



여수시 공고 제2026 - 2580호

2026년 하반기 하멜전시관 주중/주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하반기 하멜전시관 주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제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여 수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 1, 5, 6(주중)/ 1, 2(주말)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6. 8. 21.(금) 10:00
- 장 소 :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2층 회의실(신월로648)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09:4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 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발표

- 2026. 8. 25.(화) 이후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관광과(관광시설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659-5336)

여수시 공고 제2026 - 2581호

2026년 하반기 평화테마촌 주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하반기 평화테마촌 주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제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여 수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 1 2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6. 8. 24.(월) 10:00
- 장 소 :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2층 회의실(신월로648)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09:4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발표

- 2026. 8. 26.(수) 이후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관광과(관광시설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659-5336)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원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여 수 시 장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안내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나. 사업내용: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 참고

다.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라.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마.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업자금융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업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바. 지원형태 및 조건: **융자 90%, 자담 10%**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사업선정자가 침몰·멸실 된 어선을 대상으로 정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정책지원(국고+지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금에 부과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업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2. 신청기간: **2026년 8월 20일(목) ~ 8월 28일(금) 오전11시까지**

3. 신청장소: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4. 신청방법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융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사업지침에 따른 **자격조건 갖추고 대출취급기관(수협 등)에 대출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전 확인 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 취급기관 내

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 ①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 ②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 ③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④ 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허가증 또는 허가내역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시행지침을 필히 확인하시
기 바라며,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은 지침에 따름(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내기관: 여수시 수산경영과(어업지도팀 ☎061-659-3921 / FAX
061-659-5828)
- * 서류 FAX 발송 시 발송 후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부재로 인한
서류 누락시 책임소재 없음.
- 용자상담: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수협 등)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센터(☎ 061-720-3100)

붙 임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시행지침 1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분야	☐ 연안 ☐ 근해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예 ☐ 부			
어선건조형태	☐ 차세대 표준선형 ☐ 표준어선형 ☐ 그 외					
기관 종류	☐ 전자식 엔진 ☐ 기계식 엔진 * 대체건조를 어선에 설치할 기관 형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추진일		신청금액 (어선신조자금)	백만원			
피대채어선	허가 번호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채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피대채어선 처리계획	예정 공기 착공일	준공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본 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채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경영체 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 동의 ☐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 동의 ☐ 미동의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

2. 당해연도 사업계획

○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

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별지 제3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1.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2.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3.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일련번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

노후어선 대체 건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과장 양호섭 사무관 문상원	055-773-5550 055-773-5551

I.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2.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및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원에 따른 지원)
-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등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	'23	'24	'25		
■ 대체건조 신규 지원 (척)	10	2	19	2	3	익년 1월	실적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국고(이차보전)	2,277	2,490	2,710	2,904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3.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①차세대 표준 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②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 선정 기준

-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업종, 어선 형태 등) 세부 설명 자료

- (지원업종) ① 근해 전업종(근해 21개 업종) + ②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연근해 10개 업종*

* 근해(채낚기, 자망, 안강망, 통발, 연승),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구획(패류형망)

- 근해업종으로 건조할 경우 ①「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②「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가능

- 연안 또는 구획업종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차세대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연안 및 구획어선형으로만 건조 가능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의 [별표1]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총톤수, 선질, 전장 등은 다음과 같음

업종	근해 채낚기	근해 자망	근해 안강망	근해 통발	근해 연승	연안 개량안강망	연안 통발	연안 자망	연안 복합	패류 형망
총톤수	88톤	48톤	88톤	77톤	29톤	9.77톤	9.77톤	7.93톤	9.77톤	4.99톤
선질	FRP	FRP	강선	FRP	FRP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전장	39.7m	34.28m	39.1m	34.07m	29.1m	21.0m	19.34m	17.6m	19.78m	14.5m
길이	31.3m	24.50m	28.0m	25.0m	21.2m	15.5m	14.08m	12.32m	14.52m	11.20m
너비	6.09m	5.8m	7.4m	6.5m	5.0m	4.0m	3.9m	3.98m	3.8m	3.3m
깊이	2.45m	1.9m	7.3m	2.6m	1.7m	0.9m	1.1m	0.95m	1.18m	0.84m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사업선정자가 침몰·멸실 된 어선을 대상으로 정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정책지원(국고+지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금에 부과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5. 사업자 선정 및 관리(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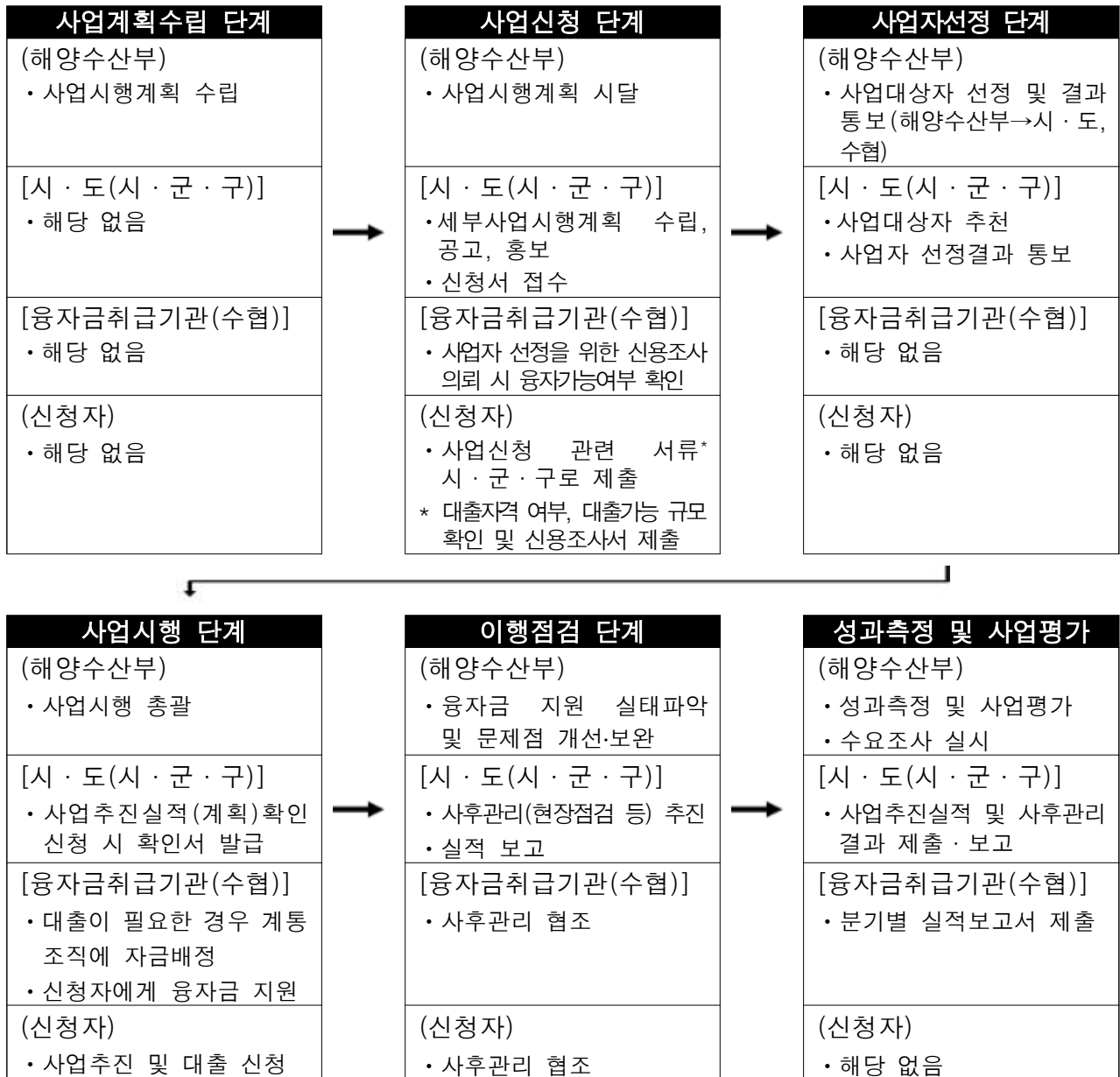
- 사업선정자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추가 선정함. 다만 차순위자 선정 시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 * 다만, 차순위자의 사업비가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라도 초과 사업비를 차순위자의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가능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됨
- * 조선소와 어선건조계약 시 사업 착수로 인정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 선정일 기준 향후 2년간 동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선정자는 자금을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전체 (용)자금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완료일 이후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 '25년 사업선정자는 '26년 12월까지 대출 완료
-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서 사유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수부로 대출연장 승인 신청
- 사업선정자는 신조어선을 기존 피대체어선을 대체하여 어선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조어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선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계획 변경(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건조단가 변동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 자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하나, 집행률 또는 자금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
- 농신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농신보 규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함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용도외 사용,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자 선정 취소, 감척사업자 선정, 피대체어선 폐선 의무 미이행 및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어선건조 완료 후 5년 이내에 어선을 임대 또는 처분(화재·침몰 등의 사고로 어선이 멸실되거나 어선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매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선을 처분할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할 경우
 - 어선 건조 단계 또는 건조 완료 시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기관 형태 변경 등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
- * (예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KR) 등에서 어선 검사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세대 표준어선형 또는 안전복지형 표준어선형의 형태로 건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전자식 엔진 미설치자 등 사업계획서 미이행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해양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선주(선장)의 과실인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 절차의 개요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 사업대상자 심사, 사후관리 등 : 시·도(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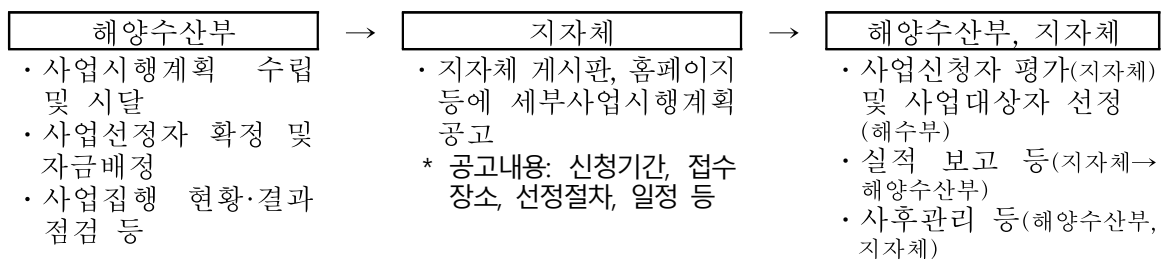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6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25.12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전년도 1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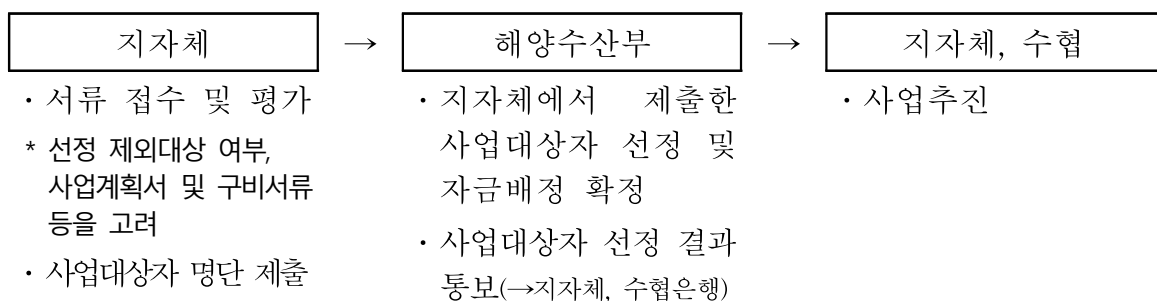
- 신청서 접수 : 각 시·도에서 공고한 관할 접수처에 제출
 - * 사후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어선 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공고시기 : 연 1회(전년도 12월) /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 및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수협은행(지구별·업종별)

-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교부

4. 사업자선정 단계

- 사업자 선정 기관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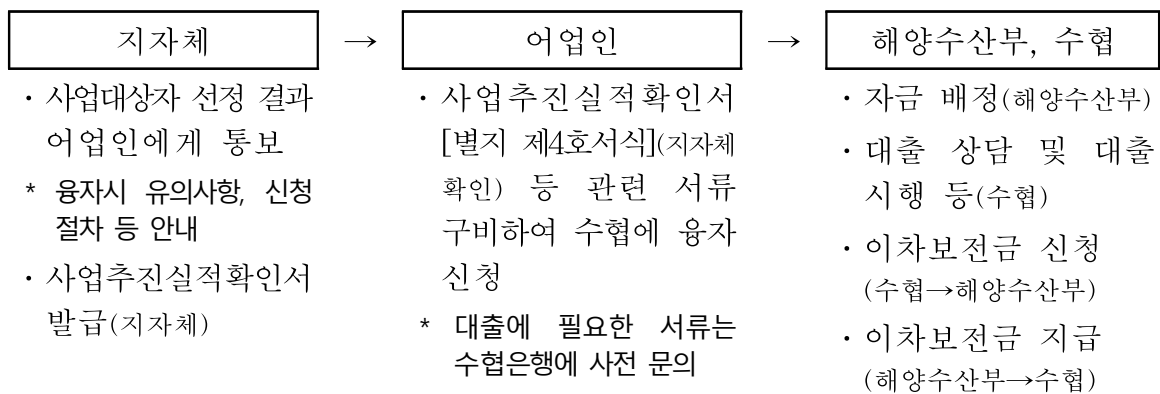


- (1차 평가)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여부,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자 확정) 해양수산부에서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자 선정·확정
-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자체 및 수협은행에 최종 사업자 명단 통보
- (사업자 추가 선정) 사업자 선정 취소 또는 사업 포기자의 자금배정금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중 사업자 추가 선정 후 통보
- 선정 절차
 - [별표 1] 평가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점수 배점 → 고득점자 순으로 정리한 사업신청자 명단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 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자 선정·확정
 -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선령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선 감톤 순으로 선정
 - 단, 추가선정의 경우 선정시까지 동일한 어선을 소유한 자로 함

5. 자금배정 단계

- 자금배정 기관별 역할



시·도(시·군·구)

- (사업 변경 또는 포기)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기타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공문으로 명단 제출
- 어업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업허가취소자의 성명, 어선명 등을 기재하여 수협은행에 통보

- 사업자선정 후 6개월 경과 1개월 전부터 어업인에게 6개월 경과 시 사업선정 취소사실과 향후 2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업자 권리 소멸) 선정된 사업자의 업종 변경(어업인 자격 상실 등),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격조건이 소멸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어선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승계 * 자금상환을 위한 승계
 -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기한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1순위인 배우자, 2순위 직계존비속, 3순위 형제·자매에게 승계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지도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 결과를 관계기관 및 해수부에 통보

수협은행

- (대출시행) 수협은행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 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관계 증빙자료(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 어선 점검 시 어선의 기관 설치 형태(전자식, 기계식) 등을 확인하고 사업선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 확인 결과 통보
- (이차보전금 신청) 수협은 매월 융자금 지원 규모에 맞춰 해양수산부에 이차보전금 신청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융자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 적정성 검토 후 예산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6.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방지
 - 점검일정 : 연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예산 집행현황, 부정사용 여부 등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관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
- 점검일정 및 결과보고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최소 1회 이상) 현장점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7.10, 1.10. 까지 결과 보고
 - * 상반기 점검결과는 7.10.까지, 하반기 점검결과는 1.10.까지 보고
 - 「보조금법」,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수행상황 점검
 - * 어선 건조 후 어선 소유자 확인, 감톤한 어선의 톤수 확인, 안전복지형 표준선형의 변경·개조 여부 등을 확인
 - 시·도지사(시·군·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 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자금상환 완료전) 이내에 어선을 처분(매각, 대여 등) 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과 사전에 상의하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

7. 사업평가

- 연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개선 추진

IV. 행정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관련 규정 및 해양수산부 행정지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별표 1] 사업자 선정 기준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 본 심사표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심사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시 본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이행 여부는 수협, 지자체에서 농신보 보증 이전 확인(지침에 반영)
-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거나 행방불명된 어선의 경우 선령 및 소유기간은 사고 발생일(행방불명의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평가는 제외하고, 잔여 평가항목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환산한다.
- 사업신청자가 불법어업 전력(최근 3년 이내)은 건당 최대 5점씩 산정하여 총점에서 제외한다.
- 이 경우, 사법처분은 산출하지 않으며, 행정처분 중 경고 1점, 어업정지 10일 이하 2점, 30일 이하 3점, 60일 이하 4점, 60일 초과(취소포함) 5점으로 하며(3년누적), 과태료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건당 3점으로 산출한다.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점수)	평가내용	평가기준			
어선 (85)	어선 선령 (30)	1. 어선의 노후화 정도	30년 이상 (30)	25년 이상 ~ 30년 미만 (20)	20년 이상 ~ 25년 미만 (10)	15년 이상 ~ 20년 미만 (5)
		☐	☐	☐	☐	
	평가방법 :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를 확인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선의 선령을 평가하고 선단의 경우 건조하고자 하는 어선의 평균 선령으로 평가					
	어선 형태 (30)	2. 표준어선형 건조 여부	차세대 표준어선형 (30)	표준어선형 (25)	그 외 (1)	
		☐	☐	☐		
	평가방법 : "차세대 표준어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라 건조하는 어선 "표준어선형"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건조하는 어선					
어선 톤수 (20)	3. 어선 감톤 정도	10톤 미만	어선의 10% 초과 (20)	현재 어선 톤수 (1)	중톤한 경우 (0)	
			☐	☐	☐	
		10톤 이상	어선의 5% 초과 (20)	현재 어선 톤수 (1)	중톤한 경우 (0)	
			☐	☐	☐	
평가방법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단의 경우에는 건조하고자 하는 어선 전체의 감톤량으로 평가, 다만 차세대 어선 건조를 위해 복지공간 등을 중톤할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0점 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점수)	평가내용	평가기준					
	어선 소유 기간 (5)	4. 어선 소유 기간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15년 미만 (3) ☐	10년 미만 (1) ☐			
		평가방법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실 소유기간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유 기간은 어선원부 등으로 확인						
자원 · 환경 관리 (10)	자 원 보 호 (5)	4. TAC 참여 기간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15년 미만 (4) ☐	5년 이상~ 10년 미만 (3) ☐	5년 미만 (2) ☐	미참여 (0) ☐	
			평가방법 :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어선의 TAC 참여 기간 확인 (시범사업 대상자도 TAC 참여 기간 반영)					
	기 관 유 형 (5)	5. 전자식 엔진 설치 여부	전자식 엔진 (5) ☐		기계식 엔진 (1) ☐			
			평가방법 : 어선 건조 시 전자식 엔진 설치 여부 확인/전자식 엔진 설치 가능여부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재 정 상 태 (5)	자 금 대 출 가 능 여 부 (5)	6. 신용조사서의 신용등급	6등급 이상 (5) ☐		6등급 미만 (1)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용조사서로 가늠. 보통은 6등급 이상으로 하고 그 외는 6등급 미만으로 채점						
감 점	불 법 어 업 전 력	7. 불법어업 감점 : -7점(어업정지 60일, 과태료 100만원)						
		평가방법 : (어업정지) 경고1점, 10일이하 2점, 30일이하 3점, 60일이하 4점, 60일초과(취소포함) 5점 * 3년간 어업정지 총일수가 60일 경우 -4점 (과태료) 100만원미만 제외, 그 이상 건당 -3점						

■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업종/ 선명		최종 점수	
자금지원 적격여부		순위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분야	☐ 연안 ☐ 근해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어선건조형태	☐ 차세대 표준선형 ☐ 표준어선형 ☐ 그 외					
기관 종류	☐ 전자식 엔진 ☐ 기계식 엔진 * 대체건조할 어선에 설치할 기관 형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추진일			신청금액 (어선신조자금)		백만원	
피대채어선	허가 번호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 질	진수연월일	피대채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 질	피대채어선 처리계획	예정 공기	
					착공일	준공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본 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채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 동의 ☐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 동의 ☐ 미동의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

2. 당해연도 사업계획

○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별지 제3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1.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2.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3.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 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융자금	자부담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동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일 일 일

()시·도지사(시·군·구) (인)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누적)	총사업비		
				계	용자금	자부담
	연안		'25.12. 기준 준공완료한 어선			
	근해	차세대				
		표준어선				
		그외				

2. '25년 신조선 건조 추진현황

일정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여부	준공예정일	
		미준공시 작성	

3. '24년 이전 지원어선 점검 결과

	기본사항	시군구	선정연도	대체어선명	사업자명	어선운항 여부	소유자 변경 여부
1	대체어선 건조 현황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						
	선체변경, 매매 등 특이사항						
	기본사항	시군구	선정연도	대체어선명	사업자명	어선운항 여부	소유자 변경 여부
2	대체어선 건조 현황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						
	선체변경, 매매 등 특이사항						

* 서류 또는 전산 점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작성하고 특이사항 등 사업자가 보조금법 및 사업지침 등 관련 이행사항을 미준수 또는 위반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협으로 공문 시행

** 피대체어선 폐선 현황은 폐선업체 등을 통해 서류 확인 필수

2026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18. ~ 9. 2.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온라인교육(보충1차)

2) 교육기간: 2026. 8. 10. ~ 9. 30.

3) 교육대상: 여수시 3년차 이상 지역 민방위 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4) 교육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ivildefense.co.kr)

5) 문 의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민방위 담당자(☎ 061-659-1887)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18.

화 양 면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	김O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자매로 **	폐문부재
2	공O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나진1길 **	폐문부재
3	신O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전동길 **	폐문부재
4	김O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학동로 **	폐문부재

2026년 지역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지역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 8. 19.(수) ~ 9. 3.(목) (15일간)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지역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기간: 2026. 8. 10.(월) ~ 2026. 9. 30.(수)

3) 교육대상: 주삼동 3년차 이상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중 교육 미이수자

4) 교육방법: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및 접속(<https://www.kcmes.kr>) 후 본인
인증하여 수강

5) 문 의 처: 주삼동 민방위 담당자(☎ 061-659-1651)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2026. 8. 19.

주 삼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	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62,***동 ****호 (봉계동,대광오투빌)	폐문부재
2	김*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3	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62,***동 ***호 (봉계동,대광오투빌)	폐문부재
4	김*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5	문*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62,***동 ****호 (봉계동,대광오투빌)	폐문부재
6	문*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62,***동 ***호 (봉계동,대광오투빌)	폐문부재
7	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삼덕양로 191,***동 ***호 (주삼동,파인빌리지)	폐문부재
8	서*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9	심*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682-26,101동 902호 (봉계동,신동아아파트)	폐문부재
10	이*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62,***동 ***호 (봉계동,대광오투빌)	폐문부재
11	이*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층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12	이*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13	이*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층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14	장*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15	전*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16	정*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삼덕양로 189,***동 *층 ***호 (주삼동,파인빌리지)	폐문부재

연번	수취인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7	정*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18	정*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동2길 **-* (주삼동)	폐문부재
19	조*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62,***동 ***호 (봉계동,대광오투빌)	폐문부재
20	주*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50,***동 ***호 (봉계동,아주타운)	폐문부재
21	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682-26,***동 ***호 (봉계동,신동아아파트)	폐문부재
22	최*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62,***동 *층 ***호 (봉계동,대광오투빌)	폐문부재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4.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북6길 23	20260812	건축물말소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북11길 6-18	20260812	건축물말소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북11길 6-20	20260812	건축물말소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동 76-7, 76-26, 76-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북6길 23	2026081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7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86	2026081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0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514	2026081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14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 초도로 228	2026081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14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 초도로 228-1	2026081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호명동 11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호명3길 18	2026081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